

제421회 국회  
(임시회)

#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20일(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 1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 제사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정사상 초유로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현문란에 대한 정의에 보면 ‘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형법 내란의 죄 제87조 3호에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에 보면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방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동사태를 가볍게 여길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일별백 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서부지방 소요사태와 폭동사태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10시0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긴급 대법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11시경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도 출석 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사 상황상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질의시간 7분으로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했다시피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주로 간사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제 있었던 법원 상황은 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고……

○**박범계 위원** 오랜만에 간사한테 권한을 주셨는데 뭘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건지 와서 말씀을……

○**유상범 위원** 진행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간사님들께서 있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오늘 법원에서 어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 그거요?

○**서영교 위원** 예, 그래서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체적으로 듣고……

○**유상범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차장, 대신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혹시 지금 법원에서 피해 상황 같은 것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집계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추가적인 산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그것을 진행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것 보고를 미리 들을까 하다가 피해 상황은 아마 지금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빠뜨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끝난 건 아니지요, 피해 상황 집계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질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늘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어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현장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정상적으로 재판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1분 하세요, 1분.

○장동혁 위원 지난번 금요일에도 공수처장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상황을 이유로 공수처에서는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처장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관대했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장이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여러 사정,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가 관대하고 그냥 ‘이런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공수처에서 누구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의 저런 호소는 저는 일견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부기관 기관장 내지는 관계자들을 기관증인으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고발도 하고 조치도 했는데 요지부동, 묵묵부답인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공수처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과방위원장은 하고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했는데 장관도 안 나와요. 심지어 국민의힘 어떤 위원들은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출석을 독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위원님들 일곱 분이 연서명을 해서 공수처 현안질의 한 사항과 오늘의 현안질의는 좀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공수처에 관한 현안질의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수처 현안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공수처장의 불출석사유서는 왔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구두로 요청했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구두로 요청하더라도 보통은 지금까지 다 불출석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

○**박범계 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부지런하게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만든 문건을 입수를 하셨네요. 여기에.....

배형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박범계 위원**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서영교 위원님께 드렸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개별 질문 하지 마세요.

○**박범계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사태의 경과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추산은 다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시작할 때나 아니면.....

○**위원장 정청래** 잠깐 줘 보세요.

○**박범계 위원** 예.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고하게끔 하는 것이 위원님들 질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넘겨주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뭘 시간을 또 따로 씁니까?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장님, 이 정도만이라도 중간 집계, 중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저만 봐서는 안 되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이 자료의 작성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처장이 참석을 못 한 이유가 9시 30분에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이 돼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은 대법관회의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 이고요. 오늘 전체회의에 대비를 해서 작성한 문건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내부 문건인데 그게 또 의원실에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보고용으로? 차장이 전달해 준 겁니까?

○**서영교 위원** 진행 상황이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

○**유상범 위원** 글쎄, 물어보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부 보고 문건이라고 해서.....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도요 누구한테 물어볼 권한을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대부분은 시간상 정리한 것이고.....

○**서영교 위원** 그게 다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게 다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됐거나 저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따가 다 보고를 쳐장이 오시면 하겠지만.

‘사태 경과, 2025년 1월 19일 새벽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 지시 후 퇴근’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3시 32분경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되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함’, 이게 시간 순서 보고인데 그다음 이걸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법원 직원 대피 상황, 법원 직원들은 최초 십여 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였으나 곧 현관이 뚫려서 옥상으로 대피함.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킴. 옥상에서 이십사오 명이 대피하면서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 약 1시간 후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으나 2차 침입을 대비하여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하여 청사 밖 시위대가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시 15분경 청사 내 진입자 모두 퇴출되었으나 일부 시위자가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 이런 건데요.

지금 옥상까지 대피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 직원들이?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쳐장 오시면 오늘 회의 결과를 이따 말씀하실 테니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다 배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따로 보고할 필요도 없이.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아니,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해요.

○송석준 위원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준태 위원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받고 또 위원장님께서 적의 조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 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현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조문의 의미를 기소가 불가하고 그리고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었는데 대체로 기소를 못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법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견해들도 있고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남은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런 선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환조사 받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직무상 기소되지 않는,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거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그런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하시는 분들이 수사는 받고 재판은 받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법제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통령하시는 분들 재판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남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이번에 그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본안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면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은 본안에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이 확정되면, 범죄가 확정되면 그러면 이런 선례가 명확히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겠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 선례가 남는 것이지요.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돼도 모든 범죄 혐의 계속 수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직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고 소환조사 받아라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요.

이런 혼란을 공수처가 또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관별로 책임성 있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기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 사유가 딱 열다섯 자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차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건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구속은 도주 우려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 중대성만으로 영장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역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구속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과연 이 법리 적용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 법원에 또 수사기관에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깜빡했는데요.

교정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좋은 말로는 구출 내지는 서울구치소로 또 습격해서 이런 폭동·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이 추측 보도만 해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수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하세요, 안전 이런 부분까지.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서울구치소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혹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영장 대기할 때와, 이제 영장이 떨어져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구인 대기실과 일반 사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어저께까지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 완료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이동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서울구치소에 두 번이나 갔어요. 앞 사동, 사동별로 1·2·3방은 다 독방이지 않습니까? 1.04평 맞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의 하나를 지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체적으로 독방에 있는데, 일반 독방은 1.04평인데 윤석열 피의자가 있는 독방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3.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특별한 일 없이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

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서울구치소에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구치소 앞에 윤석열을 빼내자 이런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찬반 양측의 시위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철저하게 경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서버에 물이 쏘끄려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사실입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제처장, 이런 일이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화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저 사람들 플래시 들고 잡니다. 플래시가 준비되어 있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 갖고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마니, 법제처 차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 주고…… 윤석열은 11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  
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전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 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  
을 넘어가서 짚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조치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차운경 잡  
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  
요.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  
렸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자,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  
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운경을 찾아 들어  
갔어요. 차운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CCTV는 방재실과 당직실 두 군데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  
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후에 현장을 봤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님,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릅니다. 그리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일반적이지 않고, 7층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플래시가 아니라  
진짜 플래시를 들고 갑니다. 찾아갈 것을 준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  
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의 염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  
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입한 겁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핸드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의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역압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검사가 다시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현정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입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오늘의 이런 현안질의의 목적과 다르게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부지원 폭동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물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염중함을 우리 여야 위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그렇게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송석준 위원** 그리고 상대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본인 질의에 이렇게 예의 없이 하면 되겠어요?

○**박은정 위원** 저 질의 못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신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본인이 아래라저래라 위원들의 발언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정신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같이 이런 엄중한 회의에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이 되므로 1차 경고합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퇴장 내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신청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서부법원에서 발부를 할 때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와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불법하다면 영장 발부와 적부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과 영장 연장과 그다음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계속해서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대행님,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법원을 인정 안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의 수사권 인정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박은정 위원** 법원의 영장은 모두 적법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박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법을 알려 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은정 위원**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장 기각한 것,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뭐니까? 영장 재지휘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지요.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것 아니예요? 저런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 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하니까 지금 폭도들이 법원에 침입해 가지고 ‘아,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 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종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해당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담당 검사요? 이것 대검에서 지휘한 것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것 아니예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박은정 위원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지요,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법과 기준에 따라서……

○박은정 위원 해당 검사 혼자서 저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박은정 위원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

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 주세요.

이러한 법원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것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러한 법원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 폭동 행위에 백골단이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배숙 위원, 저항권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조배숙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유상범 위원** 정도껏 해, 정도껏!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박은정 위원**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조배숙 위원** 선동했다고 보세요?

○**박은정 위원**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조배숙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박은정 위원** 뒤엣것 보여 주세요.

○**유상범 위원** 이것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위원** 조용히 할 정도가 있어야지.

○**박은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배숙 위원** 말을 가려서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위원** 이 정도는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지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질문할 게 없어요?

○**박은정 위원** 전광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석동현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곽규택 위원 뭘 뒤에서 이야기해, 앞에서 이야기하지!

○박은정 위원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종입니다.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드리지 않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안 줘요?

○유상범 위원 이걸 줘야지. 이걸 어떻게 안 줘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니까……

○곽규택 위원 당연히 드려야지요, 당연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권성동도 줘야 되고 윤상현도 줘야 되고……

○곽규택 위원 지금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은 예외입니까?

○유상범 위원 예외가…… 무슨 관계예요? 앞에서 지금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 나는 참 이상한 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숙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요.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권성동 위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배숙 위원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장 정청래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말을 했다면 질의의 대상이 돼요.

○주진우 위원 신상발언 본인이 하게 해 주셔야지요.

○조배숙 위원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신상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편파적이 아니라 대단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실명 다 거론하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대한민국에서 위원장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곽규택 위원 지금 회의장 안에 있는 조배숙 위원 실명을 거론했는데 신상발언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해요?

○**박준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법사위원들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질의하면 질의가 되겠냐고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권성동도 실명 했어요.

○**곽규택 위원** 거기는 법사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받고 싶어서요?

○**유상범 위원** 특혜가 아니지, 이건.

○**조배숙 위원** 특혜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특혜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윤상현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하더니……

아니, 법사위에 있는 사람은 특혜입니까?

○**곽규택 위원** 같은 회의장에 있는 사람 실명 거론한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내가 신상발언하겠다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는 위원들에게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 대상이 안 됩니까?

○**곽규택 위원** 질의 대상 아니지요, 현안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거론할 수 있어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 여기 있는 위원들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격해도 괜찮아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신상발언하겠다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 그리고 질의가 왜곡됐잖아요.

○**유상범 위원** 이건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위원장의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박준태 위원** 본인이 신상발언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 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145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동시에 직접 보지 못했고 자고 일어나서 법원에 누가 난입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한 장면은 시위를 하던 두세 명 정도가 담을 넘어서 갔다가 경찰한테 체포돼서 나왔겠거니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다,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두세 명이 난입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은, 폭동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행위여서 너무나 참담하고. 과연 이것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정말 이번에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여세요?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이번 사태 직후에 법원행정처장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분쟁의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위대 난입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미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법무부장관대행,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법치주의와 사법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통상 검찰에서도 법원과 견해가 다른 경우들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난입하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하지요.

○**김기표 위원**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사후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그게 법치주의 본연의 모습이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편린편린들을 보면서 이게 다 원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의 신청까지 하잖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거기서 이의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그것도 역시 법원이 옳다고 판단해서 내준 거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것이 뭐였습니까? 체포 적부심이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부터 체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

정이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적부심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각됐지요? 기각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정당하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원이지요.

○김기표 위원 법원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렇다면 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체포적부심사를 기각까지 한 그런 사안에서…… 그게 1월 16일 23시 십몇 분이라고 합니다, 체포적부심 기각된 것이. 그런데 그다음 날, 1월 17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상대 당 모 위원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 시비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법체포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까지 해서 기각이 된 그다음 날 바로 열린 법사위 회의장에서 불법체포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미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을 줄 수 있다,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향후 법원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서 밝혀 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까지 기각된 것을 불법체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변호인의 적법한 변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엄중한 사안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제 판단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 위원께서는 또 공수처 수사권 운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할 운운하고 있어요. 그것은 체포영장 변호인 의견서에 담겼어야 될 내용이고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얘기가 됐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적부심 기각을 한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일종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만.

○**김기표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의 제기가 되고 의견이 들어가고 해서 결정된 것이 수차례에 걸친, 10전 10패니 하는 그 어떤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한 내용에다, 판단의 근거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체포 운운하는 것은 저런 과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라는 아주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께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틀어 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저런 집단행동 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 위원들조차도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신들도 법치주의라는 외피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이 안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우리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체포영장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고, 구속적부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위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불법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 와야 된다’, 법무부차관, 이것 내란 선전·선동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목사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정청래**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부지법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쓰세요. 본인이 질의시간 다 받으면서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란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윤석열을 모셔 와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배숙 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것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유상범 위원** 본인의 질의시간을 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질의를 계속하면 뭐 하러 질의시간 부여가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법치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사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이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시간을 쓰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이럴 때 양비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곽규택 위원 양비론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위원장 정청래 국가기관에서 불의와 정의의 중간에 서면 안 돼요.

○유상범 위원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정의로운 편에 서야 돼요.

○유상범 위원 본인은 정의롭다 생각해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회이면 다 정의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법치에 서야 돼요.

○유상범 위원 내가 말하면 정의예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서영교 위원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유상범 위원 뭘 폭동을 옹호해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세요.

○곽규택 위원 왜 그런 말까지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폭동을 옹호하지 않아요.

○서영교 위원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유상범 위원 그게 내란이라는 게 선동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상범 위원 아직도 선동하고 있어요.

○박준태 위원 얼른 하세요, 빨리.

○위원장 정청래 진행하는 거고요.

○서영교 위원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조배숙 위원 누가 폭동을 옹호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도 조작이라며!

○위원장 정청래 ‘도둑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장동혁 위원 그 말씀을 질의시간에 하시라고요.

○유상범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이렇게 혼자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법을 지키고 얘기하세요.

- 유상범 위원** 위원장도 질의시간 얻고 하세요.
-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이야말로 질문시간에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도 마찬가지고 유상범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 주진우 위원** 왜 질의를 지금 하십니까?
-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 곽규택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좀!
- 박균택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 유상범 위원** 뭔 답변 태도야.
-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 이성윤 위원** 위원장이 충분히 그런 것 지적할 수 있지요.
- 박균택 위원** 그러면 계속 내버려 둬요?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안 주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 박균택 위원** 양비론으로 나가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란 말씀입니까, 위원장님이?
- 이성윤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뭐 하고 있어요?
- 주진우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 이성윤 위원**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 유상범 위원** 답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질의시간에 그걸 가지고 추궁하면 되지!
- 박균택 위원** 그래서 그냥 끝까지 놔두라고요?
- 위원장 정청래** 떠들지 마세요.
- 박균택 위원** 지금 태도를 지적을 해 줘야지요.
- 위원장 정청래** 떠들지 마시고요.
- 박희승 위원** 손 들고 합시다, 손 들고.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 박준태 위원** 아니, 손을 아무리 들어도 발언권을 안 주세요.
- 박희승 위원** 손 들고 합시다, 손 들고.
- 조배숙 위원** 발언권도 안 주는데요.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방금 주신 자료 중에 피해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서부지법 직원분들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부분은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신체적인 상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고민 중입니다.
- 곽규택 위원** 지난 주말 사이에 현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이런 소요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 곽규택 위원** 그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됩니다. 저도 서부지방법원 찰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의 위치가 사실 이런 소요사태라든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 사태가 법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서부지방법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부터 많은 시위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곽규택 위원**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의심을 하게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을 했다. 판사는—당시 판사를 말하는 거지요—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정당의 협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하고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협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했어요. ‘영장 심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 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 대형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주는 이미지가 뭔가 불공정하고 이게 다른 사례들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적사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이런 것에 비해서 볼 때 발부 사유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서부지법의 경우에는 왜 영장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 당직판사에게 이런 것을 맡겼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법원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자면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은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파견을 해서 보안관리 대원을 증설해서 이번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청사 보안의 외부적인 부분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시위대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사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경찰이 보안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청사 측면에 있는 당직

실의 유리를 깨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바람에 아마 청사의 출입문도 무너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은 당직실 입구를 막기 위해서 자판기를 이동해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당직실의 유리창이 깨지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종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층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했었을 때 저희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력 투입을 해서 보안관리대원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지방법원에서 왜 영장전담이 아닌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요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당직판사가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법관이 사무 분담을 해서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지방법원처럼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에 있어서는 주말까지 영장전담법관이 나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서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판사가 담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상당수의 법원에서 그와 같이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차장님, 지금 내규 말씀하셨는데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내규로써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 사안의 심각성과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원래 규칙대로, 내규에서는 당직판사가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판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리를 좀 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회의하고 오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대법관 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법관 회의 통해서,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경과보고서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를 혹시 잠깐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먼저 두 꼭지, 한 꼭지는 저희들이 내부 확인용으로 이번 서부법원 청사 진입 사태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와 관련해서 전체 대법관님들이 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을 나눈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월 19일 날 새벽에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인계하

도록 지시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3분경에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3시경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3시 7분경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을 했습니다. 3시 21분경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법원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시 32분경에 경찰이 법원 내부에 투입되어서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작했고 그사이에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시 15분경에 청사 내 침입자가 경찰에 의해서 모두 퇴출되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여전히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7시 28분경에 청사 외부 시위대도 대부분 해산이 되었고 일부 시위자들만이 청사와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전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간부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과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부법원의 담당자들도 어쨌든 사법 업무가, 재판 업무가, 사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또 시설 지원을 해서 오늘 업무는 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파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본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들의 개인에 대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태り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와 같은 극

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조인이든 또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고 또한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그 토대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와 같이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반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이와 같은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 외국처럼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의된 입법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안 알려진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서부지방법원 7층에서 폭도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동영상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돼 있더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어제 간략히 봤습니다마는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판사의 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다른 영장판사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실은 파손된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영장판사 사무실의 짐기 이런 것 등은 파손된 게 있어 보이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정도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파손된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무실과 차은경 부장판사도 같은 층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판사였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파손한 것은 확인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정도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차은경 어딨어? 차은경 찾아, 차은경’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그 방송은 봤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변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은 파손을 강조하는데 행정처장님은 들어간 흔적은 있고 그다음에 답을 안 해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 조용히 하시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왜 질문을 해요? 의사 진행에 질의권이 어디 있느냐고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침입한 흔적은 있다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

○위원장 정청래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게 침입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 차은경 부장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어제 진입한 곳은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7층에 다른 판사실이 있고 판사들이 7층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는 9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다른 판사 사무실에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침입의 흔적은 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7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에 없고 9층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9층에 있다는 사실은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어제 1·19 서부법원 침탈 사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정말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저 자신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심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내란이라고 보는데 법무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성윤 위원 법제처장님, 1·19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 내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에서 판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성윤 위원 이것을 수사를 해 봐야 합니까?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 가지고 3시간 동안 법원을 점거하고 물건을 부수고 ‘판사 나와’ 소리 지르고, 현장 목격 다 하셨잖아요.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우리 법조인들이 정말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폭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장님, 그러면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법치주의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이러한 모든 근본 원인은 법원의 영장,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는 윤석열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국힘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3 내란 때부터 윤석열이 저기 관저에서 석열산성을 쌓고 싸우는 것, 싸움을 독려했고 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내란을 부추길지 모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은 뭐라고 했느냐? 1일 편지에서는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전사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한 말이에요. 또 체포 직전에 한 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또 윤석열의 변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법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국힘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치켜세웠어요.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이 폭도들이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비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힘의 의원이 현장에서 월담을 해서 현행법으로 체포된 사람들한테 ‘곧 훈방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문자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공수처장 차를 막아서 학생들 3명이 체포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사 후 곧 석방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 방해하고 내란을 선동한 국힘 의원들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그리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진 출석했는데 왜 구속했습니까? 아니, 올 때 안가 CCTV도 지우고 또 비화폰 통화내역도 지우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출석을 했다잖아요. 이런 김성훈 차장을 불구속한다고요?

김성훈 차장이 불구속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됐어요.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김성훈 차장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이성윤 위원** 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을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경호법 절차에 따른 경호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치소 내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동할 때 김성훈 차장이 근접해서 경호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김전희에 대해서 현재 접견 금지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변호인 제외하고는 접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변호인은 접견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안 됩니다.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심기 경호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경호를 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호 계획 짤 때 접근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경호법에 의한 경호는 대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 그다음에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예 옆에도 못 가게 하십시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검찰에서 이번에 경호처 차장을 불구속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이번에 구속된 윤석열 그리고 10명의 구속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검찰에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도 석방했고 또 최상목 대행도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라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관님, 검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검찰에서 내란 잔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

면 언제나 내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금 피의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피의자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경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이 있는 곳 안으로 경호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협의를 해서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기본적으로 경호법의 대통령……

○위원장 정청래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 부분이 저희들 계호권하고……

○위원장 정청래 더군다나 피의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옆방에서 같이 살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거기는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경호권하고 계호권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협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특권의 특권의 특권,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특권 시비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돼서 혹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경호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경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도관의 계호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거라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살아 봤어요? 안 살아 봤지요?

교도관이요 보통의 시국사범 같은 경우도 일대일 계호를 합니다. 그거보고 계호라고 그러지요.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계호하는 교도관들이 여러 명 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호가 필요합니까?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시위대들이 습격해서 서울구치소가 뚫렸다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요, 더군다나 지금 격리 수용되어 있잖아요. 누가 와서 윤석열을 습격한다고 거기 경호처가 가서 경호를 합니까? 거기 있는 교도관이 계호하면 되는 거지. 쓸데 없는 망상들 하지 마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번 시위대에 의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앙 정치인으로서, 특히 법사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자성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오명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국민들 어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엄정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부터 자성해 보시고 특정 시각에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법을 판단하시고 법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돌아보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거나 또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우리 사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들도 여러 번 나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 시위와 소요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한 건 없는지 또 선전 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그리고 경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히 평화적 시위가 이런 불법 시위로 전이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

다.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제 대한민국에 정말 초유의 어쩌면 세계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법원 쳐장님, 혹시 어제 판결문 기억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열다섯 자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있지요,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딱 열다섯 자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땠습니까? 최대 600자로 청구 사유에 대해서 기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그것 혹시 어떤 사유로 기각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도대체,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려한 그러한 측면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송석준 위원** 누구에게는 이렇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후적인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법적인 질서에 따른, 사법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한 재판 독립의 원칙 또 법관은 법정에서 그 누구로부터의 간섭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역시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자성하고 시정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에 있어서 저희 사법부가 자성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 그리고 또 구속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영어의 몸이 되고 정말 비참한 구속 구금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여기저기 있지요. 그것은 엄정한 법질서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송석준 위원 철저히 따져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수사권은 있는지 제대로 영장 발부됐는지 그리고 구속영장 재판 과정에서, 청구 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엄정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증거인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거인멸 시도가 목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 과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언급들 많이 있었고 보도된 것 아시지요?

저기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과 현재 사안들 모두 사법기관 그다음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엄정하게 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신속하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법무부장관님, 극우 유튜버들의 선전·선동 현장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삭제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경태 위원 개별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한녀의 라이브 또

신남성연대, 용만전성시대, 김사랑 시인 등이 ‘혁명이다. 후문으로 갑시다’, 법원 창문 파손 시범을 하는 등 확실한 범행 영상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살인미수죄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물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요죄 등의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 다 수사해야겠지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집회가 폭력성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경위도 있겠지만 폭력 행사한 것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사실 방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폭동, 폭도들이 법원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천대엽 처장님, 지금 유튜버들이 아주 많이 영상을 잘 올려 줬다가 또 삭제하고 있는데 법원 CCTV나 서버 랜선 뽑고 물을 뿐 여려 가지 혼란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 서버에는 이상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확인 그리고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혹시 법원 직원들 중에서 다치신 분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분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분들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두 번째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판사 죽이려 가자’, ‘차은경 어디 있어?’,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죽이려 가자라고 벼젓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살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어제 현장을 목격한 제 입장에서는 더 충격으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장경태 위원** 살인미수로 혹은 살인 예비·음모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집단으로 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건물 침입한 행위는 특수주거침입죄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죄가 성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 내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행위는 공용물손상죄일 것 같고요. 경찰의 무기를 빼앗고 방패까지도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지금 46명 정도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할 것 같습니다. 소요죄까지도 다 포함된

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 어떻게 강제로 모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 인원들과 당연히 물리적 집단적 폭력 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들 중에는 혹시 그와 같은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육칠 역에 이르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석동현 변호사는 ‘별금 모아서 내면 되는 것 아니냐. 별금 내가 내 줄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혜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면 목숨 걸고 차벽이고 뛰고 다 빼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 처형할 겁니다’라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폭력시위 선동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선동 정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소요사태를 조장하고 실제 소요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광용 회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사태, 17명 월담 인원들이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명의 월담부터 시작해서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후 곧 석방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외압으로 인해서 폭력 난동이 선동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이 시위대가 폭동을 하게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처장님 보시기에 거친 항의 정도였습니까? 물건을 깨부수고 서버를 훼손하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어떤 맥락에서는……

○장경태 위원 폭력사태지요.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옥중 입장을 통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 풀어 나가길 바란다’. 어떻게 원만하게 풁니까? 이미 폭력을 조장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성전이다. 지지자들은 십자군이다’. 이양수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란 폭동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 폭동사태에 대해서 마치 관용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유도한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권영세·권성동·이양수·김재원 모두 다 고소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법원에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자칫 유리와 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모든 법조인이거나 비법조인이거나 헌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법치주의를 절대적으로 성원하고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그런 가운데서 절제와 자제의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장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장관직무대행과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력자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거나 그렇다고 권력자라고 해서 더 무겁게 또 권력자 앞에서 야수로 변하는 건 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 과정과 여러 재판 과정에 대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궤를 벗어난,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라는 논의를 떠나서 상궤를 벗어난 몇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 사건 내란죄를 넘길 때 수사권에 관한 여러 논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갈 때 이미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라는 우표를 붙였지만 그 실질은 내란죄로 가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을 빌미로 해서 내란죄를 가져갔지만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는, 원칙적인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두 가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만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판단을 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논란이 되었고,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많은 논란을 부른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경찰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장에 대한 재청구를 했는데 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일주일이었는데 두 번째는 통상의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훨씬 넘어서 3주간 유효기간을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0조, 111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지적했지만 야당의 모 최고위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당사로 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노력한 적 있습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자의 진술만이 문제가 된다면 기소하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아니면 적부심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이 훌러가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상궤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40조에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나 일반 절차는 형사소송에 준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철회됐느냐 철회되지 않았느냐. 결론은 철회됐든 철회되지 않았든 내란죄의 그 요건 사실과 법리는 그대로 탄핵 사유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유입니다. 지금 내란죄 형사소송과 탄핵 사유는 동일한 사유입니다. 내란죄라는 말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구성요건 사실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정지하거나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격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행정처장님, 윤리위에서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있다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에 의하면, 법관 사무분담·사건배당 예규입니다. 제14조에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 모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대법원 재판 예규나 그동안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리인 중 한 명의 관계고 그냥 재단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관계에 불과하다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고, 대부분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 보면 이 결정은 그것과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다음 박희승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시위대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입법부 침탈에 이어 사법부 침탈입니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물겠습니다.

아까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유감인 게, 지금 바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들도 다치지 않았다,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해도 굉장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봐요. 더구나 담당 판사는 판사실까지 침탈을 당했고 7층, 8층, 9층은 판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거기 유리문이 있어서 변호사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그 유리문이 돌파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판사들의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갈 것인데, 법원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법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즉시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법원 내부 직원들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먼저 위원님께서도 법관 출신으로서 이번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떠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관 개개인에 대해서, 특히 이번 영장 관련 재판을 맡았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신변 보호 조치를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

씀 주신 것처럼 정신적인 충격을 법관뿐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여러 일반 직원들이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 측에서는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 업무를 사법 업무를 그래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법원 내부가 돌파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원 경위들을 보강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미국 법원도 방문해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희승 위원** 거기 가 보면 정말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권총 차고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박희승 위원**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에 맞아서 판사들이 돌아가신 상황도 있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희승 위원**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번에 지키려 간 경위들이 권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폭도들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적어도 권총을, 실탄은 몰라도 공포탄 정도는 가지고 가서 초기에 제압을 했더라면, 법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직원들이 막 10층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방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 보안 조치는, 사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떠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보안관리대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정 안에서 혹은 법원 안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모색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니, 법원 직원들, 판사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최후의 헌법기관이 이렇게 무참하게 침탈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처럼 제대로 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판사에 대한 도 넘은 마녀사냥 낙인찍기, 신상 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순형 빨갱이’, ‘신한미 빨갱이’. 다 윤석열에 대한 1·2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순형 외 종북 판사 일동 삼가 서부지방법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 화환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언사나 행동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외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

로는 조금 더 예방 혹은 사후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차은경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또 현재 재판관까지도 ‘이미선 아웃’ 이런 팻말이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번 서부지법 난동·폭동 사태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요죄뿐만 아니라 내란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현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형법 87조 이 폭동에 해당된다는 건 아까 차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희승 위원** 91조 2호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염격하게 하고.

법무부차관님도 법 적용을 좀 염격하게 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대범죄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서 전원 구속 수사해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왜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박희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에 포함되는 91조(국현문란의 정의)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란죄, 국현문란이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 볼 때, 서부지법은 헌법기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강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강압으로 볼 만한 그런 불법적인 폭력 행사……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판결 행위,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못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내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심판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위원장 정청래** 또 하나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어요. 그 수사를 서부지검에서 해요. 법무부차관님,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것을 재판할 관할 법원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통상적인 구조라면 서부지방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부지방법원이지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이 이 재판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 폭도들에 동조를 하는 세력들 같은데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들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또 언론에서는 논란으로 부추겨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 또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불법적인 헌법기관 침입·난입 행위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바라는 의도도 성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내란 피의자조차, 그 변호인단들조차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불법의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니까 시위대들이 사기가 올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법무부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뜯미지근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 그런 개연성을 더 키우는 거예요. 법무부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있잖아요.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재판은 서부지방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무부에서 성명 낼 거예요, 그런 주장 하면 안 된다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간사입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서 세 분의 정부 측 인사가 왔는데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 시위대 중 한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도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까지도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이 중요한 사안에 같이 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불러서 함께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오후에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양 간사님께서 협의 좀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출석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

○위원장 정청래 아니, 협의를 하시라고.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의 전제가 되는 제 판단을 말씀……

○위원장 정청래 예.

○박범계 위원 당초 이 현안질의는 전대미문의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한 책임,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준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간사간 협의도 됐고요.

공수처장도 유상범 간사께서 불러 달라고 했지만 현재 윤석열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본인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된, 향후의 예방책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조배숙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아까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을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였고 또 지금 탄핵심판이 밀려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3심 제도가 아닙니다. 단심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래서 이것 국민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항권이다. 이것은 국내 헌법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는 저항권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헌법학자가 저항권 행사를 폭력으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이 발언을 이번 사태에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우려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정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또 법원의 공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적법절차,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일반 국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과 같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했지만 조국 전 대표 보세요. 1심·2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출마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때야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분이 똑같은 당에서 출마를 해서 현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그리고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법원에서 다 영장이 발부됐다 얘기를 하지만 판사들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7일 날 대법원의 백모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판사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서부법원과 같은 그런 사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면에는 왜 이런 사태가 촉발이 됐을까, 거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그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수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냥 진입로를 열어 주고 있어요.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막았어야지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보세요. 비키니까 계속 들어…… 셔터 올리고 길을 터 줬잖아요? 여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판사에 대해서 정말 못 할 말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촛불행동 대표의 페이스북 보세요. ‘반드시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 ‘체포된 윤석열을 우리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수갑 채워 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좀…… 됐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보세요. JTBC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보세요. 여기서 선동한 사람이 ‘밀어, 밀어’ 들어가게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튜버 ‘어쩔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극좌 유튜버예요. 그런데 이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JTBC에서 올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내렸어요.

제 얘기는 서부법원 사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아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언론의 태도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법기관 아닙니까? 사법기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관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권한이 있다고 나서고 또 체포영장도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법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대로 적법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주의, 주장은 충분히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팩트로 인식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위원께서 방금 경찰이 길을 터 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쪽에서 터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터 줬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경찰들은. 그리고……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그 뒤로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막았어야지요.

○유상범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막았어야지.

○곽규택 위원 그래도 막았어야지요. 의미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미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법사위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법사위 뒷문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밖에서 안 막아요?

○곽규택 위원 앞문이라도 막아야 돼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 경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이미 다 들어와 있다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곽규택 위원 그런 선동하는 발언 하지 마세요!

○박은정 위원 경찰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들 하세요.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누가 옹호해요, 폭동을?

○박은정 위원 왜 폭동을 옹호하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청래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막지 않은 경찰을 뭐라 그러는 거지.

○위원장 정청래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폭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지 마세요. 가짜뉴스를 말하지 마세요.

○박은정 위원 경찰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침입한 상태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지.

○박준태 위원 괜히 논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곽규택 위원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나무라도 되지 당연히.

○조배숙 위원 제 얘기는 더 막았어야 된다 이거지요.

○박준태 위원 조배숙 위원님 주장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위원장 정청래 이러지들 마세요.

또 하나, 법원이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무슨 선동이야 이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곽규택 위원 누가 선동을 해요?

○송석준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망언이에요, 망언. 누가 폭동을 선동합니까, 누가?

○위원장 정청래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불공정합니까? 법원이 불공정해서 그래서 폭도들이 들어갔으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준태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상범 위원 누가 잘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아니지요? 법원의 공정성을 시비를 삼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백 보, 천 보, 만 보 양보해서 법원의 그런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돼요?

○유상범 위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이 그걸 나무라야지,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 누가, 여기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배숙 위원 폭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래요, 본인 시간에.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위원장 질의시간에 하라는 말 하지 말고 그 발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왜요? 왜 안 돼요, 그게?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시고.

○유상범 위원 발언권을 안 주면서 혼자서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질의를 하는데……

○송석준 위원 발언권은 공정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박균택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의사 진행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은 폭넓게 진행하는 겁니다.
- 박균택 위원 이게 의사 진행입니다.
- 유상범 위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그건.
- 위원장 정청래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위원들의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폭동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 송석준 위원 아니, 왜 그런 망언을 하세요! 그거야말로 망언입니다, 망언!
- 조배숙 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정청래 폭도들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법원을 나무라고 경찰을 나무랍니까!
- 곽규택 위원 원맨쇼 많이 하세요, 원맨쇼.
- 위원장 정청래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 듣는 거예요.
- 유상범 위원 아이고, 내란 선동하고 있네, 계속.
- 조배숙 위원 거기야말로 내란 선동이에요.
- 위원장 정청래 어떻게 경찰을 나무랍니까? 피 흘리고 있는 경찰들 못 봤어요?
- 송석준 위원 그런 망언 계속 이어 가지 마시고 즉각 중단하세요!
- 박은정 위원 피해자를 나무랍니까? 법원이 피해자예요, 법원이!
- 이성윤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위원장 정청래 폭도를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관을 나무라고 있어요.
- 이성윤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 박은정 위원 뭐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 (일부 위원 퇴장)
-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피해액이 육칠 억 된다고 그랬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니에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대법관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거기 체포되고 앞으로 수사받는 사람들에게 청구해야 되겠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교정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드디어 일반 재소자처럼 수용복도 입었지요?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수용번호도 부여받았겠지요?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부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몇 번인지는 모르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소자와 거리상 많이 떨어지고 격리되어 있는 특별한 사동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반 재소자와 마주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마주칠 일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도록……

○위원장 정청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간이나 이럴 때는 따로 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일반 재소자와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병사 주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이 있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쪽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쪽은 아닙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따로 비웠겠네요, 쭉.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다 비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접근 못 하도록 옆의 방 같은 것 다 비워 놨겠네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청래 어쨌든 다른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계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사실은 서울구치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로서는.  
경호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경우 경호하는 거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호도 마찬가지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달려들면 보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경호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동할 때가 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백번 양보해서 서울구치소 밖을 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경호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구치소 안에 경호원들이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경호할 일이 없지요. 서울구치소가 가장 안전해요.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안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전광훈 목사, 서울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 나오겠다 이런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없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높은 사다리 같은 것 올려놓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사다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제가 말씀드리기 좀……

하여간 저희들은 경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교정본부장으로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간다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으니 들어갈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들어갈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박지원 위원 교정본부장, 경호처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치소 안에서 경호하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도관, 교정본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 부분 협의를……

○박지원 위원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교도관, 교정본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협의를 잘해서, 경호권하고 계호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과거 보면 전직 대통령들은 별도, 여사 쪽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과밀 수용 문제도 심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물론 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상당한 예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정 업무를 무시하는 경호처의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고 또 지금 현재도 다른 사동에서 밖에서 경호한다는데 사무실 주지 말고 배척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살펴보지 말고 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정사상 초유의 사태, 사법부를 침탈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폭동사태는 여든 야든 국민 누구나 다 공분의 대상이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현안질의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또 법원행정처와 검찰·법제처 기관장들께서도 한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오늘 준엄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동과 경찰의 대처를 양비론적 입장으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해받아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다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일부 옹호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제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질타하고 반대하겠지만 폭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고 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폭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요. 영장 잘못됐다, 불법체포,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 주시지요.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하얀 모자 쓴 것 보십시오. 플래시 비치는 모습들. 얘기를 잘 들어 보시지요, 이제.

방금 보여 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법원행정처장님도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구입니까? 누군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지요.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다녔고 그다음에 플래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보셨지요, ‘나와 봐. 점거해.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 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행사에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 줬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지요.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을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게 만평이기는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윤갑근이 합니다.

그리고 ‘애국시민이 막아 주기를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지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것 아시지요?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이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께 감사한다. 곧 석방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별금 내가 대신 내 주겠다’…… 그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지요. ‘별금 대신 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중의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번 폭동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 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폭동 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지요. 이 앞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저항권 계속 얘기하더니 실제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동운 죽일 놈의 좌수처장 차량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항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폭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왔던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 못 하고 제대로 비판 못 하는 것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한계가 또 염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부지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다 공격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

해서 법정 최고 형량으로 구형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위 이런 데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본인들 마음에 좀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위 이런 공공기관을 공공연하게 습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것 침탈하는 장면을 몇 시간 동안 생중계로 다 봤어요, 잠 못 자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법원 청사로 난입한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일단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 법치주의를 위해서 법원이 오늘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감사합니다.

**○주진우 위원**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태양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서 관여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기관에서 잘 선별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진우 위원** 주동자는 엄단하지만 또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안이 비교적 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기준 전례들에 비추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언제나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이번 수사와 재판은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현재 민주당의 선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제가 종전의 대규모 불법 폭력사태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총궐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유혈 사태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당시 사안도 매우 중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다수가 뱃줄, 각목, 쇠파이프, 방화물, 횃불을 미리 준비해서 차벽에 동원된 경찰버스 50대를 부수고 차벽을 넘어서 주요 기관을 향해 가려던 것을 경찰관이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을 폭행해서 120여 명이 다쳤고 또 실제적으로는 민간인까지 해서 140명 정도 다쳤습니다. 또 경찰관이 탄 차량을 불태우려고도 했었어요. 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때도 직접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사람만 처벌했지 집회에 참여한 일반 국민을 폄하하거나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배후설을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 현장에서 5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어요. 그리고 고교생 2명은 훈방 조치됐는데 이때 그러면 나머지 49명을 다 구속했나?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물론 제가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시랑 비교를 해 보면, 이 49명 중에 몇 명을 영장 청구했었는지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대략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당시 주도하고 폭력 정도가 강한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에서 6명만 발부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께서도 법치주의 훈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엄단 의지를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폭력·소요 사태의 주범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고요, 그 사람의 지시로 이게 준비가 됐던 거거든요. 그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밧줄, 사다리를 사전에 다량 구입·배포한 민노총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또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방화를 직접 시도했던 사람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침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내란죄라고까지 부풀리는 것은 너무 간극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시키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민노총의 반미투쟁과 함께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선처 기원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43명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석방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민노총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처벌 무풍지대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노총 주도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부지법 사태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훈손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시되 종전의 사례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증거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규명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탄핵 재판하고 대통령 구속수사의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형사재판으로 구속되면 6개월 만에 1심이,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열면서 많은 기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죄명이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탄핵이 인용돼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나서야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열어야 6개월을 맞출까 할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일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전부 너무 기일이 촉박하고 기일이 너무 많이 잡힌다,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향후 재판에서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부 관할인 형사재판 영역에 있어서는 담당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 줬어요.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차관님, 주진우 위원 질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그 혼란 대국민 담화 이런 것 하나 안 합니까? 아니, 죽 서 가지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단호한 의지 표명, 강력한 처벌, 이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거 하자고 제안한 사람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권한대행 중심으로 연석해서 회의를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현명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정도 사안이 안 됩니까, 이게?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단호한 의지 표명하는 것이, 충분히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박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군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저는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법원 침공사건을 보고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이 끝났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내란의 두목이 체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끝났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속 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를 하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법부를 물리

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어느 위원님이 질문할 때 민노총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던데 민노총이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적이 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적 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배후 선동세력들 얘기를 할 때 의사표현의 한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를 가지고 단순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폭력점거 전담팀 만든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균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박균택 위원 이번에 법원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신원 파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신원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5개 이상의 죄명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설령 일부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란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동정범들 아닙니까? 거기 법정형을 보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구형이 제대로 되도록 일선을 잘 감독하셔야 할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배후 선동세력이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 이번에 무슨 짓 했는지 아까 김용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 봤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국힘의 윤 모 의원, 월담을 해도 훈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추긴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법원 침공 사태 이전의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조사하고 곧 석방될 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나온 답을 보면 ‘지지자들은 이제 저 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부추긴 것 아닙니까? 그

교사범 꼭 수사가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힘 지도부의 권 모 의원,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더군요.

○박지원 위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박균택 위원 예, 권성동 의원.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종교인이 관련돼 있다는 그런……

○박균택 위원 그 사이비 종교인 전 모 씨……

○박범계 위원 이름을 불러요.

○박균택 위원 그래요.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님들이 총회 이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참회하라. 책임을 지라’, 성명서 낸 것 보셨습니까?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인은 과거에 ‘하나님은 나한테 죽을지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단으로 규정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생기니까 상황을 잘 살펴서 가치 있게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할 때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당을 지금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삼십대 시위 참가하는 청년 중 절반이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조용하던 이삼십대 청년들,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들이 백골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침탈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인 때문인지 극우 유튜버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과 국힘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인지 일당 때문인지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차관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서부지검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출석 여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살인범이 자수를 하면 우리가 불구속합니까, 자수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박균택 위원 그래도 구속을 하지요. 그 이유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자수범마저도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녹취록, 비화통화기록, CCTV 다 지워 버렸고 이번에 올 때 핸드폰 안 들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자가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

까? 국법 집행을 방해하도록 선동을 하고 강요를 했던 자가 경호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를 그 검사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학폭은 전학을 보내든지 잘라야지 그것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그 검사는 그 정도 머리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 외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일선 지휘 똑바로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도 일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씀할 겁니까?

차관님은 법무행정의 책임자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경호원들에게도 불법이라고 얘기 안 했지요? 나 그것 몹시 불만인데 이거라도 좀 똑바로 지휘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 사법질서가 파괴된 이 마당에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분노가 끓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 강하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럽다’ 하니까 ‘한국 봐라’, 이게 찬사와 조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그 폭동 폭도들을 기소하면 사법부에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폭력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 부분은 우리 법치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추상같은 그런 엄벌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가장 친한 친구 서울법대 동기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법제처장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충고를 했던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 지위가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그런 충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법제처장은 가장 측근이에요. 계엄이 해제됐을 때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삼청동 안가에 가서 논의한 내용이 아직도 국조본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볼래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차 거짓말이에요. 밝혀질 거예요.

알았습니다.

법무부차관, 업무 잘하시고 있는데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을 사실상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당나라 검찰이에요?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잘했다 잘못했다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박지원 위원 김성훈은 김건희파로 황제 경호차장을 하면서 심지어 폭죽놀이, 김건희 행복하라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다, 제가 맨 먼저 이것을 폭로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보십시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에 딱 가둬 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 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 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도 보도 나오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오니까 기관단총 2정, 실탄 80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못 할 것 아니에요. 주범을 영장 기각했는데 어떻게 종범을 해요? 김신 가족부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정본부 교도관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냐고요. 저도 거기에서 3년 살아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호관이라 하더라도 감옥 간, 구속된 혐의 대통령을 뭐가 좋아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호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누구 통해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안 하잖아. 왜? 내 친정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교도관들의 그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고, 계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호관을 들여 보내서 함께 경호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정본부장 스스로 교정본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과 원칙이 뭐예요? 법과 원칙은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의 계호를 받게 돼 있지 경호관이 들어가서 함께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과 원칙 아니에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

○박지원 위원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속된 내란수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 등 일부 경호원들이 서울구치소 내부 빌딩에 와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합동 근무하고 있는 것 철수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거기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도 경호받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전직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현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현직인 점을 좀 고려해서 경호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하지 말라고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 법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윤석열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란수괴야! 도대체 이 나라 집권 여당 사람들이 옹호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구속 안 했냐? 법에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다 구속 기소하나요? 불구속기소도 하고 1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확정하면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대통령비서실장도 1심에 유죄 판결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항소심에서는 별금형 받더라고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 5년째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집권 여당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해서 되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구치소마저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유념하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 앞으로 3년 반간 법사위원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교정본부 혼나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저희들……

○박지원 위원 이런 짓 하면 안 돼!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본부장님 잠깐 서 계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교도소 담배 사건 종종 일어났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 왜 일어나는 거지요? 교도관들이 조폭들, 밖에 있는 관계자들과 내통해서 식자재 트럭에 담배 숨겨 와서 조폭 우두머리가 담배 나눠 줘서 교도소에서 조폭 조직원들 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종종 터졌지요, 담배 사건?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조폭이 아니라도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교도관들이 밖에 있는 사람과 내통해서 불미스럽게 돈 받아먹고 해서 처벌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사형수 이렇게 안 부르고?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최고수……

○위원장 정청래 최고수 이렇게 부르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그 사람들은 수갑 차고 있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수갑 평상시는 차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갑은 요즘은 안 채웁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우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필요한 경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특별관리하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내란수괴는,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고 있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장 정청래 특별관리 대상이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

○위원장 정청래 특별관리 대상 맞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하여간에 좀.....

○유상범 위원 질문시간에 좀 합시다. 이게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래요. 오늘 유난히 위원장이 말씀이 많으시네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교도관들 있잖아요, 계호를 할 때 일반수들이 달려들어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제지합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제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호관들도……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요, 교도관들도?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것은 특권 중의 특권, 특혜 중의 특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박지원 위원이 그래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하여간에 그……

○박지원 위원 지금 말이지요, 본부장!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지원 위원 일부 유튜브에서, 그것 나도 낭설인 줄 알아요. 지금 경호관들이 소주 넣어 가지고 윤석열이 술 취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오해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런 낭설까지 그냥……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위원 낭설이라고 하잖아!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낭설까지 뭐 하러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님!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지원 위원 낭설이라고 하잖아. 그런 오해 받지 말라고 하잖아.

○유상범 위원 무슨 오해를 받아요, 여기서? 꾸 참았어요.

○위원장 정청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가면 윤석열 내란수피의자와 내통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안 좋게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하여간에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호관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경호에 꼭 필요한 한도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경호관들이 있으면 비둘기 날려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도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

니다만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도 같은……

○**박범계 위원** 나라고 그래요, 나. 내 이름 얘기해.

○**유상범 위원** 아, 굳이 그 얘기를 뭐 하려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말을 하더라도 항상 자제하고 절제되는 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이름 얘기해, 박범계 위원도 같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뭘.

행정처장님,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이것을 변호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다만 그 행위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일반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가짜 언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황당한 보도를 합니다.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폭동에 앞장선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어쩔아재’라고 극좌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이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 이것 선동이지요? 100% 선동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을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마치 극우 유튜버가 선동한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이것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유상범 위원** 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요. 객관적으로 극좌 유튜버가 나서서 뒤에서 이렇게까지 선동을 하는데 이것을 극우 유튜버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이 언론,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행위를 한, 폭력사태를 벌인 그 친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경비를 했던 경찰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경찰들의 임무입니다.

○**유상범 위원** 한번 영상 들어 보세요.

조배숙 위원께서도 이미 들어 준 영상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어느 순간에 경찰들이 경비를 서던 것을 다 피하고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진입로 열어 주라는 지휘 경찰관 있지요?

경비를 서는 경찰이 안에 사람이 있고 폭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체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논리대로 말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열어 줬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폭동을 선동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와 같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많은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90년 이후에, 저도 법조인 오래 하면서 이것 처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국민들이 사법부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 공정성에 대한 믿음, 공정하다는 외관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깨졌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혹시 못다 한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저도 분명히 그렇고, 오늘 이 자리는 이 폭력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란 선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것은 내란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분명히 이것은 수사권 없는 수사라는 주장, 이것이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유상범 위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수많은 고소·고발이 될 때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 논리가 연장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행 중인 사건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그대로 형성됩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번 쟁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법원에 신중을 주문한 겁니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나 결과는 여기까지 왔어요.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처리에 있어서…… 공수처가 기소권 없

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26조지요, 공수처법? 공수처법 31조는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에 대해서만 관할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조에 의하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결국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영터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이 관할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토지관할의 관점에서 영장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 절차 범위 내에서 그러한 쟁점들이 걸려지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한 관할의 문제가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

○유상범 위원 주장 중의 하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이게 어떻게 내란 선동이 된단 말입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야 되지, 그것을 안 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서는 거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 절차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법적인 쟁점에 대한 주장과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 과정에 민주당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잘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실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안 줘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할 게 없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유상범 간사님 질의할 때 몇 분 위원들이 유상범 위원 들리도록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유상범 위원 알고 있어요, 나도. 내가 얘기만 하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범계 위원 질의하세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아까 주진우 위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노총 집회를 이번 서부지법 포위와 난입 폭동 사례하고 비교를 했는데, 법원행정처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전자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말 그대로 집회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의 유형력 행사였던 반면에 이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공공건조물을 4만 명이 둘러싸고 수시간 동안 계속적인 구호와 폭력적인 언사를 했으며 그 당시 홀로 있는 영장 전담판사의 영장 업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난입을 했고 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차이가 조금 나지요? 많이 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박범계 위원 차이가 좀 납니다, 안 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점에서 저희들은 큰 차이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큰 차이가 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김석우 차관, 앞에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등등이 국민의 힘과 무관하지 않은 소요·폭동 사태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적 관계들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저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O’라고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통진당 사태의 정당해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경우라는, 미래의 확률이 상당히 적은 전제 조건하에 소위 통진당 내의 지하조직인 RO가 두 차례 회합을 했다, 그 당시 국가기관을 파괴하겠다. 뭘로? 압력밥솥 폭탄으로. 차관의 선배 격 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당해산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요죄란 형법 교과서에 위험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처장님, 소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만 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부지방법원의 재판업무 기능에 훼손을 가했습니까? 후자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고 오늘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소요죄는 결과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대단히 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사법 기능에 대한 훼손이 발생한 것은 맞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 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뭐예요? 소요죄에서 말하는 다중의 힘으로 폭력을 가한 것, 그 폭력은 최광의의 폭력입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동입니다. 맞습니

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국가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지요? 국가 기능, 사법 기능이 훼손됐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부 훼손된 겁니다.

○박범계 위원 통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납니다. 내란죄는 통솔 체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솔 체계, 장경태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이나 여타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전제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윤상현 의원의 발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안내 발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 오자라는 발언……

그리고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서울에 있는 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입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통솔 체계에 의해서 적어도 서부지방법원 오후 5시 심문 시각부터 새벽 3시 직전의 영장 발부 그리고 차은경 부장판사가 미로를 통해서 탈출하기까지 그 이후의 과정들, 이 난입의 과정들 여기에 지휘·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예요.

내가 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내 얘기가 맞습니까?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가설이 성립되면 내란죄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현문란 목적과 지휘·통솔 책임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겠네, 이러다가는.

○박범계 위원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유상범 위원 무섭게 나오네.

○박범계 위원 유상범 간사님 조용히 하세요. 무섭지요? 무서울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무섭게 나온다고.

○박범계 위원 RO만 가지고도 통진당을 해산한 선배 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거예요.

행정처장님, 오늘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CCTV 저장장치 파손’이라는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러한 파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손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이 내막을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박범계 위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지요. 들어가서 자기들의 동선들이 찍히고 그것이 사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정도면 이것이 단순한 무지몽매한 폭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휘·통솔 체계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서 먼저 자기들의 동선까지 없애 가는 치밀함을 발휘한 계획적이고 집단적이며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사법 기능의 훼손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박범계 위원**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도 그렇게 수사를 믿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김석우 대행, 경찰 어찌고저찌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그 특별수사팀이 중요해요.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에게 지휘를 하세요.

국가적 존립 기능을 훼손한 이 법원 난입 폭동사태에 대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휘할 생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게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불법.....

○**위원장 정청래** 폭동 맞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명칭은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폭동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게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어제 대검에서는 명칭을 부여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폭력적인 행동, 이게 폭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왜 내란인가,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틀어 주세요.

(14시5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를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헌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뭐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위원장 정청래** 정확하게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이지요—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지금 영상 보셨지요? 법원의 기능을, 권능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이것은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면에서 저도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확인부터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없지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아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란이지요.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는데 헌법에 있는 어떤 조항을 봐도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고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5·16 군사쿠데타, 군사 반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것에 대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지요. 법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것이 또 내란인 것이요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것

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형법 제115조 소요죄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141조 특수공용물손상방해죄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고요. 치상죄 하면 이것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것은요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별금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들어가요.

이참에 폭동과 끊자고요, 손을.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 분명히 밝혔고, 제도권에 있는 누가 이 사태를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입을 막을 권리까지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문제 지적까지 법원 소요사태 일으킨 사람들과 주장이 비슷하니까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의 내부·외부 경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법원 내부는 법원 소속된 경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준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 인력 좀 채용해서라도 대폭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 인력과 예산 사정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도 적극 이야기를 해서 획기적으로 법원 내부의 보안 능력을 갖다가 확충하는 그런 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비단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들이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필요할 경우에 국회에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 법무부 교정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박준태 위원**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셨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준태 위원** 윤석열 대통령 잘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셨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서울구치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지요. 보고는 실시간으로 받고 계신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실시간이라기보다 필요할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게 확인할 길은 없는데 여러 건강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들도 들렸었는데 어떻게,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건강 상태는 충분히 양호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구치소 내에서 경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서 경호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태 위원** ‘구치소 내에 경호관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입장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필요한 경우는 수용거실이라고 하는 감방을 나와 가지고 접견이라든지 또 병원 진료 때문에 의료과를 가거나 또는 그 외에 운동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 나가는 중에 다른 수용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전담 교도관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이 많은 데를 가게 될 때 이런 경우에는 혹시 또 경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네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내부에서 운동이나 샤워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그런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담 인력을 벗어난 다른 분들과 만날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렇습니다. 워낙 계호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신변에 당연히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게 어떤 정치인 누군가의 주장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경호처와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준태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경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우나 의전이라는식의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법적 의무 조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법적 근거에 따른 건데 이것이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거부를 해도 경호 활동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빈틈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박준태 위원** 권한대행께 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대통령 접견권 제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러면 변호인만 만날 수 있고 가족은 만날 수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가족 접견까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과 연관된 사건이나 협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굳이 막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느냐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속한 공수처에서……

○**박준태 위원** 판단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제한 조치를 한 부분이라, 교정 당국이나 저희 법무부 본부에서 특별히 관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특권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들이 침해받는 역차별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방어권 보장, 접견 제한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겹치면서 생기는 불이익, 탄핵 심판 속도전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좀챙겨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계속 나온, 어쩔아재라고 하는 사람의 ‘밀어, 밀어’라고 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쩔아재의 목소리だ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처이지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수사권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은 무엇으로 고발되었지요?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직권남용.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용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직권남용 자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는 직권남용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서영교 위원 아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대통령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서영교 위원 포함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대상 범죄에도 직권남용은 되어 있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고발이 되었어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라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서영교 위원 이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수사해요. 그런데 윤석열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바로 계엄을 선포한 죄예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해서 자기의 직권에 없는 것을 강요한 죄예요. ‘총 들고 국회에 가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단전·단수해라’, ‘총을 쏠 수 있으면 쏴라’ 등의 직권을 남용한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영교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정확하게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저지르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검찰과 공조본을 통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공조본부를 꾸려서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되니 마니 엉뚱한 소리들을 해 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가 되어서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만 합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법원의 판단은 서부에서도 발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다 발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관할 구역, 토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범죄지가 원칙입니다. 윤석열의 범죄지가 서초구입니까, 아니면 용산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권이나 또 관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사법절차 범위 내에서……

○서영교 위원 법원이 왜 판단한 겁니까? 근거에 맞게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관할지는 토지 관할이 우선이고 공수처는 범죄지가 있는 용산 그리고 관저를 중심으로 체포영장을 낸 것이고 거기에 법원이 이것이 적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낸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가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윤석열을 체포해서 보니까,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에 경호처 차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훈에게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20일 날 윤석열과 경호처 부장들이 오찬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체포 전에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없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면 총을 쏠 수 없나?’라고 물으니 경호처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용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기관총과 총알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서 총을 쏘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국회에 들어와서 총을 쏘라고 이야기한 윤석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국민들께……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목소리 크시다고 시간 오버를 너무 해요.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자제 좀 하세요, 자제 좀.

○박은정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전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속된 대통령인데요 전부 다 내란 관련이 있어요. 전두환·노태우, 내란·군사반란으로 구속, 재판받았지요. 박근혜 대통령…… 내란, 조현천 계엄 문건, 박근혜 대통령이지요.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5관왕입니다, 5관왕. 국민의힘 구속 대통령 5관왕 중에 네 명이 내란과 관련 있습니다.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관계자들이 어제의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왜 부추겼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막 항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배숙 위원님…… 올려 주세요, PPT.

건사랑 네이버 카페입니다. 김건희 팬카페라고 하지요. 저항권 말씀하셨더니 지금 저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저항권 발동해야지요’ 그랬더니 저렇게 ‘5·18, 4·19 별거냐’, 지금 폭동 일으킬 것처럼 저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저항권입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적법하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국민저항권을 운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어제 서부지법 폭동 전에 벌금 내 준다고 했습니다, 벌금. 이 폭동 폭도들한테요. 벌금을 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 폭동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나라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취지로 의견……

○박은정 위원 소회를, 이 발표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결의문에 담긴 그대로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대부분의 법관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파손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법관 또 법원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태라고 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히 대법관회의를 열어서 결의문에 담긴 바와 같이 대법관님들이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자 대법관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나라 존립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법원 폭동이 정말 저는 시작이 아닐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탄핵 재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폭동이 용인되고 폭동을 부추기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법원을 무시하고 법원을 경시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과 관할과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 영장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시그널이 되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제의 그 폭동을 보면 서부법원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폭도들이요. 왜냐하면 CCTV를 정확하게 가서 파괴를 하고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 기기·기구들을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7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가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부법원 판사들이나 중앙지법의 이 영장과 관련된 판사 등등에 대해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 관련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날낱이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대법관, 선관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테러가 비상계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판사들에 대한 공격, 법원에 대한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법원을 공격하는 국기문란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 일부만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박은정 위원 전부 구속하시라고요, 전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은정 위원 구속 사유에 모두 해당해요.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 지금 내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길게 하던 걸 줄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법원 폭동’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 오해해서 ‘법원이 폭동을 일으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난입, 폭도들의 폭동,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박지원 위원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위원장 정청래 요즘은 하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차관님, 변호인 외 다른 사람 접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주 없는 일이고 그런 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런 건 아니기는 합니다.

○김기표 위원 자주 있는 일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김기표 위원 ‘있을 수 있는 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이른바 특수 사건하고 그런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럴 때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체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기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마치 가끔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표 위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지금 이런 사건은, 대부분의 중요 사건에서는 보통 접견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사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건을 같이 비유를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나쁜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 현직 대통령은 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이런 사람 얘기를, 이런 사람을 언급해요.

먼저 이것도 차관님께 한번 질의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가 사안이 같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안 자체는 분명히 다르지요.

○**김기표 위원**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면에서 다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환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 등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차관님도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 두 번, 공수처에서 세 번 출석하라고 했는데 다 불응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안 오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차관님?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갔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나오라고 통지했는데도 체포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1차에 공수처가 가서 그 난리를 치고도 잘 안 되고 2차에는 마치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다들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해외까지 다, 외신에 송출되고 하면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되어 나온 사람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차관님, 구속을 왜 합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왜 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니다.

○**김기표 위원** 기본적으로 재판정에, 법정 출석을 담보하는 것이 크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도주를 하지 않도록,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저렇게 체포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계속해서 법정에 나가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나가겠

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순순히 나오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리한 겁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공수처에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도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법원에서도 발부한 것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초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왜 나를 구속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법원행정처장님,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 몇 마디 쓴 것 가지고 마치 이게 부실한 거라는 등 그런 듯이, 혹은 당직 판사가 했으니 부실한 듯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영장이 기각되는 건 당연히 검사가 청구를 하니까 그게 왜, 검사가 이렇게 몇 톤 트럭에 이르는 서류를 다 동원해서 구속하자고 했는데 내가 왜 기각하는지 자세히 써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발부하는 입장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예외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영장 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심지어 거기 네모 칸에 그냥 체크만 하기도 하지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도주 우려가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대부분의 간략한 사안들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마치 당직 판사가 해서 영장이 이상하게…… 당직 판사도 2001년도에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신뢰받는 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신뢰받는 법관이고 그리고 이 양반이 굉장히 재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장도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나왔는데 마치 이상한 듯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동한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 내 법관들의 계시판에 최근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어제까지 확인하기로는 몇 사람 정도, 많지 않은 판사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분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사위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라고 있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하고 있다, 내란 정당이다, 이런 것은 법사위의 역할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을 뭐로 배웠습니까,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집단 또 사회 각계각층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회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수처장 불러 놓고 왜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관을 들고 가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가슴에 총을 맞겠다는 자세로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도대체 법사위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극언들을 했던 것이 누굽니까?

또 법사위원장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형 선고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례식장 가 가지고 고인한테 유족분들 앞에서 ‘참 잘 돌아가셨습니다’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극언을 해서는 정치의 역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제가 법원에도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 형소법 110조를 기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법사위에서 11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것, 그게 적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집행 요건이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제처장님 계시는데, 국조특위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형소법 110조·111조가 사람 신병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해서 의견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신병에 관한 영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님이나 법제처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런 혼란의 시초가 된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체포영장의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내란 선동한다, 내란 동조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이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조배숙 위원** 아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헌법기관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정치란 사전적 의미로, 제가 책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광규택 위원이 말한 이해 갈등 조정 이것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수괴 피의자로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상태예요. 정치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옹호,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견이 없을 서부지법에 대해서, 폭도들의 난입 폭동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짖는 강도가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체포되는 날 10쪽짜리 편지를 냈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두 번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세 번째는 공수처 수사권 사기 탄핵이라 주장했고, 네 번째는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선거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아직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히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정 선거에 대한.....

○**이성윤 위원** 검찰에서 기존에 수사해 가지고 명백하게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 불기소 이유를 찾아보시고 다음 기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서부지법이 발행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불법 영장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사법 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적법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런 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법무부장관 뭐 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교도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히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없었다, 과거에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 선언을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불법 영장 아니고 적법 영장이다 확실히 선언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성훈 차장 영장 기각으로 말이 많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차장이 석방이 되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치를 예고했고 그러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복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보복조치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장 하나 기각이 어떤 사인을 주냐면요, 김성훈이를 기각한 것은 단순히 김성훈 차장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내란 수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심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2·3 내란 직후에 공무원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요.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또 경호처 직원들도 윤석열이 지시한, 아까 말한 것처럼 ‘총을 쏠 수 있느냐’, ‘예’ 했다 이런 부분도 경호처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체포에 응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었는데 김성훈을 불기소,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수사기관 내에서, 경찰 그다음에 검찰·공수처 내에서 윤석열 구속으로 인해서 수사 끝난 것인니까 우리 안심해도 된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대행조차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수사 끝났다 해 가지고 이번 특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있어요. 검찰을 명확히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필요한 범위……

○**이성윤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10명 구속 건 외에 그 후에 구속됐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10명 구속 기초가 이루어졌지요.

○**이성윤 위원** 그 후로 구속됐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이후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아직 구속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내란수괴가 혼자 내란을 계획했을까요? 저는 경호처 그리고 비

서실 그리고 NSC,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슨 역할 했는지 밝혀진 것 있습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이게 내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니면 국정 회복의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효 그다음에 경호처장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겁니다.

아니, 법무부장관대행이 뭐 합니까?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수사 끝나나 보다 해 가지고 안심하고 수사에도 협조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서부지법 내란 폭동 사건, 이게 생긴 것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불에서 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으면 다시 타는 겁니다. 내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서부지법 사건이 생긴 겁니다. 서부지법 내란 폭동이 다시 안 일어나려면 확실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내란 폭동이 생깁니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 옥중 정치를 하면서 끝도 없이 내란을 선동할 거예요. 차관님께서 이 사건 검찰에, 경찰에 수사를 확실히 하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 폭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압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개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봤을 때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윤 위원 수사를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가시적인……

○이성윤 위원 제대로 했다면, 지금까지 몇십 명씩 구속했다면 이런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님, 아까 제가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말을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권 있습니다. 발언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사유가 열다섯 자라고 그랬지요. 보시는 대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

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차디찬 광장을, 그 추운 날에도 밤낮을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심판받고 제대로 처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께서 분노가 폭발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 폭동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폭발하는 분노가, 어쩌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염중한 시기에 사법부나 바로 이곳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욱더 염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송석준 위원** 지금 저 구속영장 발부 사유 공감이 갑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영장을 발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쓰지 않는 게 그동안 법원의 관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영장 기각 사유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유로 발부된 것인지는 이 한 문장 가지고는 명확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동안 법원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세세하게 이유를 쓰지 않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송석준 위원** 반면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신청 기각시키면서, 저기 나온 사유는 저렇게 장문의 문장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2개 비교했을 때 납득이 갑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영장을 보통……

○**송석준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납득이 가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국민적 분노가 왜 이렇게 커져 왔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 또 이렇게 불행한 사태까지 갔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더 따져서 판단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정질서가, 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본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그리고 본인 방어권에 충실히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회…… 바로 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들이지요. 탄핵안이 몇 건이나 발의가 됐습니까, 도대체?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검사만 해도 바로 7명이나 탄핵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 중인 검사를 우리가 입법 권력을 취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표결 폭력으로, 입법 테러식으로 정상적인 수사를 하던 검사들 7명이 탄핵이 됐다, 법무부차관 공감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

○**송석준 위원** 짧게 그것 얘기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고……

○송석준 위원 공감이 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탄핵 소추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말이 왜 자꾸 바뀌어요? 문제가 많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원행정처장님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차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 현재는……

○송석준 위원 거기에다가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원장, 항상 우리 법사위 할 때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탄핵이 됐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은 공감이 갑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 헌법 파괴 행위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탄핵이 됐어요. 공감이 갑니까?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3분의 2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2가 아닌 바로 과반으로 탄핵을 시켰어요. 이것 맞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공감이 갑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기관에서 헌법 질서가……

○송석준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헌법 파괴 행위가 자행된 이 법사위부터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맞아서 국민들께 엄중하게 사과하고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헌법이 정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탄핵을 한 현장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도 진정한 반성 같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송석준 위원의 발언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을 쳐다보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면서 주먹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주먹질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법사위 일원인 송석준 위원도 반성 많이 하세요. 왜 반성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석준 위원** 지금 내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끼어드세요?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를 대표하는 위원장한테 지금 주먹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 시간에 저분들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이 뇌피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질의를 한 건데?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자꾸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곽규택 위원 등등이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조사를 하냐? 차라리 그냥 본회의에서 빨리 의결해 버리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준태 위원** 그게 그 뜻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피청구인, 즉 법률 대리인단은 뭐라고 적었냐면 왜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청문회 같은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느냐……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요. 법사위가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위헌·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박준태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국회법 제130조에 보면 법사위에서 조사해라 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은 법사위에서 조사하라는 의결이 없었어요. 당연히 법사위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탄핵안으로 바로 갔어요. 검사 탄핵은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해라 그래서 청문회를 한 거예요. 국회법 의결대로 한 겁니다. 국회법 의결대로 한 것을 가지고 송석준 위원이 법사위에서 폭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송석준 위원의 그 말이 폭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것 부결시켰어야지요. 사유가 애매한 것은 부결시켰어야지요.

○**유상범 위원** 그게 어떻게 폭거가 돼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 하는데, 그것 앞에 제목도 잘못 적었더라고요. 기각 사유인데 청구 사유로 아까 그것도 잘못 적었어요, 보좌관이 잘못 적었는지. 이재명은 왜 길게 사유를 쓰고 윤석열은 하나 쓰나……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계속 물타기하고 흐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길게 쓰는 것 저도 찬성이에요.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 질의시간을 받아서 하든지……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해서 한 줄 적었는데 한 100줄 적었으면 좋겠어요. 범죄 행위

다 적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적은 것이 저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말할 것을 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왜 남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렇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왜 평가해요!

○**유상범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는……

○**유상범 위원** 아니, 정청래 위원장은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의사 진행을 누가 그렇게 해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식 발언을 하는 게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의사 진행을 갑자기 왜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박준태 위원** 그냥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위원장 정청래** 다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운영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들 발언 하나하나 그렇게 토 달고……

○**위원장 정청래** 잠자코 계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면 잘 진행됩니다, 회의가.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소리 안 지르면 좀 평온하겠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 말만 줄이면 회의 다 잘 진행돼요.

○**위원장 정청래** 정회 전에 장경태 위원과 순서를 바꾼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도 시간을 제일 안 지키고 발언하시는 분이 송석준 위원하고 박지원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한 분 더 있어요.

○**박지원 위원** 없어요.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은……

○**박지원 위원** 저분이 제일 안 지키면서 또 남 안 지키면 제일 소리를 질러요.

○**송석준 위원** 아니, 왜 또 모함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그러시더니 또 오늘……

○**박지원 위원** 욕하지 마라.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선배님이 후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박지원 위원** 오케이.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지원 위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삼자 추천,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많이 없어졌다 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

○**박지원 위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임명 방식에 관한 기존의 위헌 논란 소지는 없어졌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주장할 거예요, 재의를 주장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특검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 소지의 어려움……

○**박지원 위원** 특검 그것……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헌 소지가……

○**박지원 위원** 나중에…… 차관 오래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동영상에 남아 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차관께서 위헌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추천 방식과 관련된……

○**박지원 위원** 담당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유무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 유무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도 직권남용으로 해서 구속도 시키고 기소도 했지요? 법원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예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구성되면 검찰에서나 공조본에서는 특검에 내고 특검이 제가 볼 때는 공소유지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폭 양보를 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최상목 대행에게 똑똑히 건의하세요. 아시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러 가지 사항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됐습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도 긍정적 답변을 했어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벼금가는 사법적 파괴이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 등 관계 장관들이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담당 장관으로서 차관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과 관련된 법무부의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장님, 물론 오늘 대법원장 주관으로 대법관회의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법원장께서도 대법관들과 함께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번 발표할 용의가 없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늘 긴급 대법관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오늘 결의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정본부장 나오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박지원 위원** 교정본부는 내 친정이라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얼마나 도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많이 저희들을 위해서……

○**유상범 위원** 정청래 위원장, 제대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곽규택 위원** 답변자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상범 위원** 이런 게 말이 돼요?

○**박지원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똑똑히 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웃지만 말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들어가세요.

.....

○**유상범 위원** 정작 잘 웃지도 않으면서 뭘 갑자기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에 대한 질의시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매우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하고 저하고 늘린다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사람을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박지원 위원** 사람 바꿨어도 하는 거지 뭘 그래. 하고 싶으면 이리 와.

○**유상범 위원** 아니, 거기까지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짧아도 내용 없는 질의가 있는데 길었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참 편파적이다, 편파적이야.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권한대행님, 대국민 담화 이런 건 필요합니다, 관계 장관끼리. 그것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JTBC에서 극우 유튜버가 폭동을 선동하면서,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방송이 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극우 유튜버도 아니고 극좌 유튜버였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유튜버가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TBC의 방송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당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면서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튜버는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극좌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버인 것처럼 덧씌워서 마치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았고 두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문제 있는 방송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소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주질의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나 또는 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장면에서 국민들께서 저것은 조금,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상궤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가지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주질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질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 장면이 뭐였나면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연장을 하면서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이 통상 일주일을 넘어선 3주라는 긴 기간의 유효기간이었고 또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적시됐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면 55경비단 관련자를 마치 내란죄 관련해서 조사할 것처럼 불러서 조사는 하지 않고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날인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법적인 문제, 위조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할 것처럼 불러서…… 그러면 거기에 온 당사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날도 마치 수사를 위해서 부른 것처럼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가져와서 날인하라고 합니다. 출입 허가에 대해서는 경비단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수차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가져와서 날인하도록 해서 누가 날인했는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날인이 됐습니다.

공문서 위조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권한이 없다고 수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날인하도록 한 행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곱 가지, 수사나 재판이 뭔가 상궤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겨우뚱하는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공문서 위조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 이 부분은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 적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것처럼 불러서 갑자기 공문서에 관인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그러한 이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서에 날인 찍는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이 참 시간을 잘 지켜 주십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재발의된 특검법이요, 그거 다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봤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됐고 위헌성 요소도 많이 제거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권한대행께 건의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직 보고드린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

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수사의 적법성이라든지 절차에 대해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데 빨리 특검법이 발차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 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특검 할 의사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현재 법무부 입장은 물으신다면 현재 상황은 위헌 요소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입장이 정해지면 권한대행께 법무부 입장은 건의드릴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사실은 지금 시간이 급해요. 특검법 공포를 해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계속 미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석우 직무대행도 빨리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부법원 침탈, 폭동…… 예상을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희승 위원** 그런데 나는 사실 법원의 대처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봐요. 거기에 지금 방호원들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가 계셨습니까, 저녁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안관제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날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무리,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총기 휴대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또 중앙법원도 재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희승 위원** 이런 우려는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서부법원 방문하고 나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청 차장, 권한대행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래도 법치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민원성 차원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정도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진입에 대해서 설마 그러리라고는 경찰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해서 미처 그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되어야지 또다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찰에서도 의견을 밝혔고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법원에서도 법원 경찰대를 운영하든지 해서 이러한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늘 경찰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판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을…… 당장 일을 진행을 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업무를 중단시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실은 거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직도 차들이 차벽을 세우고 있던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무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는 일반 사건 당사자들도 불안하고 지금 추적당한 그 판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그래서 법원이 너무…… 물론 대법관님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알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피해는 안 입었어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치료 시간도 좀 필요한데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거기 들어가는 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겁이 나던데 벌써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했다는 것인지…… 지금 부서진 상태로 그대로 벽면도 보이던데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직원들 일만 시키려고 독려하지 마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제 밤새도록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오늘 그래도 근무하기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법관과 일반직들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큰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원 자체적인 경비체제, 보안체제는 확실하게 선진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장 발부나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서로 많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대다수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이 부분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사위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저희 차장께서 계실 때 광규택 위원님 질의 중에서부법원이나 기타 법원에서 주말이나 일요일 이럴 때는, 주중에 영장전담법관들의 업무로드, 부담 때문에 주말에는 일반 당직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중앙에서는 토요일에도 영장전담법관이 영장 업무를 전담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 압수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전담 법관들이 서울중앙에서 토요일에도 계속 담당하지만 나머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은 당직 판사님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제가 문자로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분들하고 수사관들이 도착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총장을 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방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동부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지요, 방문 조사도 계속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차관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사에 응하겠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래서 그때는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방문 조사를 해 달라 이래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구인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 어떠한 경우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실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진술거부권은 조사자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진술거부권이라고 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방문 조사도 안 받겠다, 어떠한 경우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수사 방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했을 때는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좀 별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긴급 정보에 의하면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인 조치를, 지금 차관이 얘기한 대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구인을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파악이, 둘 중의 하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확인해 보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있으니까 실제로 판례로도 형성되기는 했지요.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도.

○서영교 위원 아니, 구치소에 있는데, 무법천지 아니야?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거는 수사 방해지요, 수사 방해. 참 상상을 초월하게 가지가지 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배숙 위원 차관님, 지금 서부법원 사태는 마땅히 엄중하게 의법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의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또 안 되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28일 날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불법 시위대에 의해서 기습 점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부산 지역 시위대가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9시간 점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실이 민원인의 날이었는데요 들어와 가지고 내란 공범 인정하고 사과하면 철수하겠다 하면서 밖에는 1700명이 있었고요, 실내에는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래 가지고 거기가 좁아 가지고 1층, 2층, 3층의 복도, 계단 꽉 찼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도 들어오고 방이 몇 개 있는데 의원은 사무실 방에 감금이 됐어요. 감금이 돼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식사도 못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의원이 ‘이거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서 ‘이 재명과 조국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니까 ‘헌법은 개나 줘’ 하면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법 시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겨우 오후 한 7시쯤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점거한 시위대 46명 지금 고소한 상태거든요. 보고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대통령은 누군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은 탄핵 소추된 상태고 결정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염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다면 경호에 문제가 있겠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후에, 대통령 신분이 상실된 후에 구속됐기 때문에 별개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니까 경호법상 굉장히 처음 있는 사례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라는 게 물론 실무상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라는 독자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경호하고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도소 안에서 경호관이 경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예우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경호를 내세워 가지고 예우를 한다고 하면 허용할 생각이 없는데, 다만 경호법에 의한 순수한 경호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계호 조치와 양립 가능할 수 있는 점점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저희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했어요. 그게 합당한 건가요? 이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가족들은 수사대상도 아니에요, 증거 인멸할 저기도 없고. 그런데 가족 그다음에 모든 외부인사 접견을 지금 막았어요. 나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저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탄핵심판 중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탄핵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최소한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염연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지만 나중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시시각각으로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수처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에서 바뀐다 할 때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공수처가 하나만 알고 전체적인 것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김용민 위원 차관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로 발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 대통령 지시로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게 이미 알려졌어요. 왜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사유가 증거인멸인데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길래 증거인멸 시도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구속을 안 시키고 경찰이 구속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영장을 기각해 버립니까, 검사가?

이것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낙수 공격이란 말 들어 봤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높은 지위,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극단적 행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눈치 보지 않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집회에 나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정보를 줘야 알 수 있다’,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거는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 낙수 공격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봐 봐요. 피의자 윤석열이 이미 부정선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영장이 무효다…… 이 낙수 공격하는 사람들의 지금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두 번째 영장 무효다.

지금 정진석, 권성동, 윤상현, 석동현, 전광훈, 김민전, 김재원, 우리 앞에 계시는 조배숙 위원까지 다 같은 논리를 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낙수 공격이에요. 우연히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봐 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 보냈대요. 이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이게 다 낙수 공격이에요.

이런 구조를 알고 범죄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도대체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오늘 얘기 많이 나왔지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해서 내란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소요죄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 주시지요.

폭처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체 등의 구성·활동 보십시오. 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또는 집단, 단체가 아니어도 돼요. 집단, 당시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단들을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 파괴하면 2분의 1을 가중해야 됩니다. 단기까지 2분의 1 가중이에요.

이것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종합해서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북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입니다.

어제의 폭도들은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낙수 공격의 목적을 위해서 지휘 체계를 갖췄으면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가 하는 행동들이 형법 115조·147조를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이게 뭔지 볼까요?

다음, 115조 보여 주시지요.

115조 소요죄입니다. 반국가단체가 소요죄를 저지르면 사형·무기, 10년 이상이에요. 또 도주원조,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지금 전광훈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구치소 가서 윤석열을 구출해 내자고 했지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김용민 위원 잠깐만 그 정도만 듣고요,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인지 사건을 넣으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이미 국민의힘이 관련 사건 수사하게 다 넣어 놨어요.

이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면 안 됩니다. 이미 논점이 다 정리됐어요. 외환죄도 저희가 다 삭제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고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삭제했어요.

돌아가셔서 ‘이것 빨리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 내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권한대행께 어떠한 의견으로 보고드릴 건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내일이 국무회의예요. 빨리 결정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민주당은 지금 자꾸 반국가단체, 내란죄 의율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것은 지금 법리적으로나 의율이 너무 좀 과도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민노총 주도의 예전 유혈 사태의 예를 들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아주 극명합니다. 물론 법원 공간에 직접 침입했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차벽을 뚫고 가서 주요 기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요 기관 앞까지 전진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제 저도 영상을 봤는데 미리 계획돼서 조직적으로 뱃줄이나 각목이나 쇠파이프 같은 것 준비한 것으로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휘 체계도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차벽을 다 허무는 과정에서 예전 민노총의 유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뱃줄로 묶고 사다리를 하고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해 가지고 경찰버스 자체가 50대나 파손이 됐어요. 법원의 지금 피해 상황도 심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수억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덧대서 돌 같은 걸 던지고 쇠파이프 같은 걸 휘두르고 해서 경찰관이 무려 12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인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당시를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반국가단체로 의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의율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 폭력 행위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까지도 인정됐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법정형이 징역 10년에 이르는 그런 범죄를 의율한다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요.

아까 또 민노총은 마치 어디를 점거하지 않은 것처럼 하셨는데, 법원을 점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법 테리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법치주의는 법원이라는 공간 외에 다른 공간에도 뭔가 물리력을 써서 다수가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노총을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무소불위처럼 그렇게 했던 기관들을 죽 찾아보니까 민노총밖에 없어요.

민노총이 점거했던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도로를 3개 차로만 쓰겠다라고 해서 일

곱 차로를 비워 둬서 교통이 통하도록 했었는데 무려 10개 차로를 다 한꺼번에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바람에 아예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실을, 지역사무실을 점거한 것도 민노총 관련된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노총이 150명 동원해 가지고 김천시장실 1박 2일 점거한 적 있고요. 민노총은 심지어 민주당의 당사도 점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시청도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에 대한 침탈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점유도 지금까지는 노동운동이다 뭐 그런 명분하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으레 공권력의 투입을 자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 소요사태가 나고 나서 경찰기동대 포함해 가지고 1400명 투입해 가지고 바로 한 번에 제압을 하고 전부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권력 행사가 일관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상황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의, 법원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이나 주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법무부차관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66명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까 조직적으로 해서 밧줄이나 쇠파이프 같은 것 휘둘렀던 사안하고 유혈 사태에 있어서 솔직히 큰 경증을 모르겠어요. 그때 50명 검거된 사람 중에 6명이 구속됐던 것과 형평이 맞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엄단을 한다라고 하면 민노총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경찰기동대 다 출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법치국가에서 어느 공간을 점유한다든지 침탈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번에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사태 자체가 불법적인 폭력 점거 시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명확합니다. 다만 불법 폭력 점거 시위를 벗어나서 조직적·체계적인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목적성과 계획성, 조직 체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가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여부는 참가자가 관여했던 그 시위 자체가 단순 폭력적인 시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성과 목적성을 갖춘 조직의 일환으로서 벌어진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사례와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내란 특검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1차 법안과 2차 법안이 있고 그걸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사건 범위

등을 최대한 줄인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를 5개로 줄였지만, 수사대상을 줄인 것 외에도 수사기간을 30일 줄이고 또 인원 규모도 검사·수사관·파견공무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특례조항 같은 경우도 법원행정처가 제안했던 대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주의 규정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서까지도 미리 다 제출하게 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힘 원내대표부와 협상을 할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힘 의원님들이 진실로 합의할 의사도 없이 그렇게 합의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노력하다가 뒤늦게 결렬을 선언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기망당한 그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 국힘 의원님들이 협상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이 그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정말 정치적인 요소 최대한 줄이고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 양보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꼭 심의가 되고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직무대행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충실히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시는 것이 좀 시원치가 않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처하고 지금도 공동경호방안 검토 중이신 겁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지금 검토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답변이 제가 석연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종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하고 경호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그것 당연히 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피의자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해를 주는 곳입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서울구치소가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지 대통령경호처법을 적용받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데 또 경호처법에 보면 관계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박균택 위원 그건 그쪽을 도와주라는 얘기지 거기가 와서 내부를 점령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호원 출입을 허락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은 건물 외에서 공격해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혹시 다른 재소자들이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박균택 위원** 북한 공산당들이 침공할 가치는 못 느낄 겁니다, 필요성을.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이비 교주나 태극기 모독 부대가 대통령 신체를 구해 내겠다고 침공을 해 올 수 있는데 그때 경호처는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경호처는 필요 없으니까 외부의 공격이 정 걱정되면 경찰의 협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도소가 또는 구치소가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문제가 뭔고 하니 지금 경호처 간부들은 윤석열 피의자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같이 저질렀던 공범들입니다. 공범들이 서로 회합하면 됩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데 그런 간부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박균택 위원** 간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접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접견을 금지한 그 처분에도 어긋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란 선전·선동의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만 접견하게 하는 건데 그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경호처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진행하겠다, 경호원들이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경호를 하겠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재소자들에게 평등의식을 저해하는 위화감을 조성하겠다, 이런 시도 절대 불가능하도록 본부장님이 차관님하고 잘 논의해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교정직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차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살해 협박이나 자식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집 주소까지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 카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법원과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 위협 등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이 정보가 이렇게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이것 빠르게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염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경태 위원** 참, 대명천지에 서부지법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완규 처장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법적 해석, 지금 말씀하신……

○**장경태 위원**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사이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법제처장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도 해석을 내놓는 건 법제처장으로서 좀 월권하신 것 아니에요?

○**법제처장 이완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제가 말씀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법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적 논란이 있고, 이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권위 있게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경태 위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도 법제처장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권위 있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어느 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장경태 위원** 가급적이면 더 신중하게 발언하시기를 바라고요.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께서 이렇게 폭도들이 판사에 대해서 살인을 모의하고 실행에 나서고……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출석 요구를, 안 할까요, 도대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제가 뭐…… 그거는 변호인들이 알아서 같이 의논해서 변호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인들이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브리핑을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어쨌든 변호인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이니까……

○**장경태 위원**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장은 하겠지만…… 아니, 기본적인 탄핵 서류 수취도 거부하고 변론기일 연기 신청하고 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심사에 나가지도 않고 뒤에 딱 숨어 가지고, 경호처 요원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대한민국 현정사에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국민 민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제처장 이완규** 어쨌든 변호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한 거,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대다수가 양심의…… 경호처 요원들도 젊은, 또 늘공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지금,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답니다.

아니, 왜 보복을 당해야 됩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정정당당한 경호처 요원들이 만약에 인사 조치를 당한다면 빠르게 검찰에서 오히려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관님도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좀 불쌍해요. 이 요원들 지금 여러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괴롭고 무섭다, 자기는 명예롭게 근무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막 경찰을 상대로 어떻게 하라, 막 위협하라고 하고. 심지어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이 반려된 차장한테 발포 명령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시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호처 요원들이 계속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법사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통령 윤석열이 박종준 처장한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를 한 것이고. 지금 김성훈 차장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계속 지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장이나 과장, 하위 직급의 경호처 요원들은 정권 5년짜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불법으로 자기들을 범죄자 만들면서까지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롭다고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장과 본부장과 가족부장, 3명 정도는 신병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호처가 정상화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라는 게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경호처에 있는 분들의 경호 활동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검찰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대행으로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이번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태야말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신뢰가 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마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선전·선동은 좌파 유튜버가 하고 또 경찰이 그걸 막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법언이 생각납니다,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사건 중에서 이렇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관할 유무, 체포영장에 110조·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을 쓰으로써 판사의 월권 또 2차 체포영장에는 그 110조·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또 그 와중에 판서에 대해서만 수색영장이 나오니까 주변 경계를 하는 55경비대 대장을 불러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불러 가지고 딱풀 공문을 만들어서 그것이 수색의 적법성이 있느냐 논란이 발생한 부분, 한 사건에 이렇게 많은 적법성·위법성 논란이 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장님,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사한 사례를 본 적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그것이 지금 이 불법 폭력 점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 사법시스템에서도 결국 공수처를 도입하고 아주 제대로 된 법률 규정을 만들지 못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초래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드러난 현상, 이 현상 자체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거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요. 그 고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자는……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직접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법경찰관의 구속입니까, 검사의 구속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한 영역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일이지만 사건 기록을 결국 중앙지검에 송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검사의 사건 기록을, 저희를 안 받지만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에 송치한다 그러면 이건 사경의 구속이지요? 이게 검사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사법경찰관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이 구속영장 발부는 절차에 부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제조건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만일 사법경찰의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청 검사를 통한 청구가 없는 구속영장 발부, 이거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검사의 구속이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검사의 구속이라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못 하잖아요. 검찰청에 사건 기록이랑 사건 송치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검 문제는 별론으로 치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분명히 법원행정처장님도 이 법률적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유상범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걸 검사의 구속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법문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읽으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는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

○**법제처장 이완규** 잠깐 말씀드려 보면, 그 조문을 법문대로 읽으면 구속한 검사하고 공소 제기한 검사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는 구속은 했으나 공소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지금 공수처 쪽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가지고 공소 제기는 검찰청의 검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법적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와 일반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별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이완규**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같은 결론 볼 수 있는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유상범 간사님, 법률에 대해서 해박하셔요. 인정하고요. 그러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나쁜 결론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보충할게요.

○**유상범 위원** 공부 좀 하세요.

○**박범계 위원** 아니, 공부 저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령관들이 검찰과 군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증거인멸을 얘기할 때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용현을 비롯한 사령관들이 입을 맞춰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몰고 입을 맞춘 이유는 연금을 걱정해서다.

첫째, 이분들이 자백을 하고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 선처를 받아 가지고 집행유예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재의 양형 예상표상.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엄중한 범죄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연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한다는 게 참 치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나머지 분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군요, 여기 국방위 아니지요. 처음에 잔뜩 나왔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괴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계엄사령관부터. 그 사람들이 족족 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치졸하게 연금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수괴로, 자기가 대통령인 걸 까먹고 나를 수괴로 지금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머지 사람들이 포고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이 시키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시키니까 포고령도 만들어서 대통령 수정도 받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국회도 난입을 하고 선관위도 난입을 했다,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 압수 수색도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그 재판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이 사법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검사의 지위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10일·10일인데 내달, 2월 7일 정도면……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지금 기록이 왔다 갔다 한 걸 빼면 공수처가 28일 날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얘기를 제가 우리 여당 위원님한테 들었고 토론 나가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심

판 이거랑…… 윤석열 피의자의 지금 예정된 구속 기소 시점이 약 2월 8일 정도 됩니다. 차관님, 2월 8일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날짜가 23일 그리고 죽 이어서 내달 4일, 6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 끝납니다. 그랬을 때 수사기록 인증등본도 다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 느낌으로는 지금 기일을 2월 16일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주요 증언자의 증인신문은 2월 6일 까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상하는 것처럼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마당에서 법원의 구속 기소에 따른 재판의 시작은 아마도 2월 7일 이후인 한 2월 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과 이것이 서로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교란 상태가 됩니까?

차관님, 내가 단순한 산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박범계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그때는 아홉 분이 저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그러한 공감대로 아홉 분 전부의 파면한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예상되는 스케줄과 구속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첩되지 않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어떻습니까, 제 계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는 필요한 방어권 보장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탄핵재판과 그렇게 크게 교차하지는 않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의 산술에 따르면 그와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차관님도.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번은 공존하기 때문에 공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산수를 잘 못 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부지원 폭동사태 그 자체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눈에 보이게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폭동사태를 지지하는 의

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국민의힘 비대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니고 만들어 낸 겁니다. 모르겠어요, 약간 공신력 있는 척하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에서 오고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보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읽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신상 털이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각종 극우 사이트에 퍼져 나가고 있고 아마도 카톡으로 이것이 다 공유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법무부차관님, 이런 것 다 색출해 내야 됩니다. 이것 다 범죄행위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관련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까 낙수 공격 누가 얘기하셨지요? 이것 낙수 공격에 의한 낙인찍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요. 윗물이 내란 선동하고 있으면 아래물은 더 지저분하게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부터 보겠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게 서부지법에 폭동을 했던 시위자들에 대한 고무 격려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윤석열이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 내란 선동 박수부대들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윤상현 박수부대, 일명 윤박수,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이것 어떤 관계자하고 얘기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이미 곧 훈방될 것’, 어느 관계자가 훈방시킨다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이 뭐예요? 다른 말로 서부지법 내란 폭도들이지요. 폭도들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 박수부대, 권박수, ‘경찰에도 경고한다’. 아니, 경고하면 폭도들에게 경고하지 왜 경찰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물어야지 이방적으로, 삼방적으로 묻습니까? 이게 권박수의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재원 박수는 더 가관입니다. 김재원 박수부대, 김박수 이게요,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 수괴 이재명.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것 잡아 처넣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범죄들은? 이것 범죄자들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범죄자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 표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헤럴드경제에서 백골공주, 한겨레에서 백설공주로 표현했던 백골단 안내원 역할을 했던 김민전 이런 의원들이 내란 선전·선동 박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기가 오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곧 훈방되겠지’ 이런 겁니다.

폭도들도 엄벌해야 되지만 내란 선전·선동 박수부대들, 응원부대들, 응원하는 사람들, 이것 다 의법 처리해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의사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에서 국회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장범으로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도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보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박범계 위원** 방금 긴급해서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들 46명에 대해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아마도 검찰에 의해서, 서부지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이 필요한 조치로 인정을 하신 모양인데 내일 아마 서부지법에서 폭도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경찰 병력이 밤 8시까지만 서부지법에 질서유지로 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려면 서울경찰청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즉각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셔서 8시 이후에 경찰 병력이 계속해서 서부지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긴급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지금 행안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3분간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추가질문은 하실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선수 한 세 분씩 뽑아서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럴까요?

○**박범계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세 분씩 하시고요, 박은정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정도로 하시고요.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 분, 박은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위원님 손 들어 보세요.

박준태·조배숙·주진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서영교·김기표·김용민 위원님.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이고, 서영교 위원님 뭘 또 해요?

○**서영교 위원**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관심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서영교 위원** 간섭하지 말라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서영교 위원님이요 일 욕심도 많고 일을 아주 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선택에 의해서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민주당 어떤 의원님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법원 폭동, HID 부대 OB 연루설.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공작부대(HID)의 퇴역군인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다는 HID 부대의 OB 연루설이 제보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신 모양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금시초문입니다.

○**박준태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밑에 댓글이 있어요. ‘일반인도 아니고 어설픈 연루설 역풍 맞아요’라고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을 걱정하는 얘기 같습니다.

흔한스러운 상황이니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주장이나 전파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대행께 여쭤볼게요.

55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사실상 협박당한 사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한 이유는 55경비단장이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오후에 경비단장 불렀어요.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렀지요. 갔더니 ‘도장 갖고 오세요’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인 입장인데 사실상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수처는 ‘난 그런 것 모르겠고 일단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수사기관이 군인을 속이고 겁박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 한번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사본은 보셨지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출입 허가한다는 문구를 쪽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조악하게 붙여 놓습니다. 딱풀인지 물풀인지 밥풀인지, 그래서 그게 일명 딱풀 공문이다 이런 얘기 나온 거지요.

그리고 결국 도장을 찍습니다. 누가? 공수처 직원이 찍었어요. 세상에 그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장 찍은 사람이요, 찾아서 직권남용이든 강요든 협박 등등 혐의가 있

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확실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돈 갚을 기한이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려다가 불법 감금해 가지고 돈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 만들어 놓고 억지로 팔 끌어다가 인장 찍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흐지부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끝까지 챙겨서, 이것은 수사기관의 권위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서 임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나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서 체포영장 발부를 못 하게 하는데 55경비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못 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55경비단은 경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55경비단 단장이 말하기를, ‘공문 문구를 확인한 뒤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55경비단 단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뭘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55경비단 단장, ‘공문 문구를 확인한 뒤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차관 ‘55경비단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답변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55경비단장은 ‘확실하게 확인한 뒤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차은경 판사 아들은 어떡합니까? 차은경 판사는 어떡하고요? 오동운 처장은 어떡하고요? 아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이런데 이것저것 살피겠다고 할 때입니까, 지금이? 법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이럴 때예요?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난입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폭동이에요, 폭동.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정확하게 확실하게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야기한 모두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것 충분히 수사 가능하고 처벌 가능한 내용인 것 법무부차관,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됐어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 자체의 명문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공수처법 조문에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관한 것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수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 이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내용을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

○서영교 위원 열거해 놨고 라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거해 놨어요. 열거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수처 범죄에는, 열거가 되어 있고 라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직접 관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라목 제가 한 번 더 읽어 줄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 딱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죄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관련 범죄가 라목에 딱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내란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내란죄는 바로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범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영장 법원에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최종적으로 어떻게……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법원이 그와 같은 취지로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법원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 절차와 법적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헌법이 정의한 내란죄를 열거주의로 열거한, 제한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수사권 충분히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제발 법사위에서 법을 그렇게 오해석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찰이 수사 못하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송석준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박범계 위원** 조용히 좀 해요.

○**서영교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 못하게 조정했을 뿐이에요.

○**송석준 위원** 시간 어려 가면서 억지 주장 하지 마세요, 4선 의원님.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3선 의원!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청 관련된 것은 제가 행안위로 전달을 했고 행안위 윤건영 간사가 질의를 했고 서울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경찰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토록 법 절차에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와이(why)?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논란을 논란으로 만드는 사람이 윤석열 피의자거든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하셨는데……

PPT 좀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윤석열 피의자가 제기한 논란들 11전 11패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피의자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논란을 만들고 정쟁화를 시키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저는 저런 것이 있는지,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에 논란을 만들고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이 피의자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한번 볼까요?

PPT 좀 띠워 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시작부터 모두 위법하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람 저기 앉아 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 대리인 했거든요. 저는 저거 전부 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에서 저 감찰 불법이라고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일등 공신입니다. 저분 요새 사표 내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던데 왜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사표 내고 법무부장관 공격하는…… 심지어 추미애가 절차를 파괴했다고 사과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저분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1심과 2심 법원에서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법원과 공수처 등등에 제기하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모든 위법 논란들은 논란이 논란일 뿐이에요. 그냥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데 지금 부화뇌동하는 겁니다.

현법재판소 공격할 거고요, 법원을 공격할 거고요. 공수처는 이미 계속 공격 당하고 있지요, 심지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권이 있다고 법원이 다섯 번을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저러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백 번 해야 됩니까? 이백 번 하면 됩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과 절차를 지키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당시에 판사사찰 문건 이런 것 막 배포하고 이랬어요, 본인이.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만들고 있지요. 제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논란에 논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어제 굉장히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회복이 빨리돼서 오늘 재판을 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현장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지문이 많이, 장갑을 안 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문 감식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 아침 새벽에 바로 가지 않고 오전에 가게 된 것은 사전에 국과수 등에서 현장 증거 채증 활동을 다 마치는 것을 기다려서 그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이 복원에만 관심이 기울여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법 치주의 붕괴의 현장을 우리 동료들과 또 후배들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전부 사진을 찍고 이런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뒷날을 위해서 좀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시킨 것 가지고 참 이렇게 말씀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거 체포가 예정된 그 전날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다음 날 체포되고 체포적 부심에까지 다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은 어쨌든 재판 절차가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필요한 공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체포적부심에서 이거 가지고 체포가 부적절하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됐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면 존중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비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

모 위원께서 민주노총 집회를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도 ‘물론 이 건은 법원을 넘어간 건이라 다르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원을 넘어간 것, 도로 7개 차로 점거하려다가 10개 점거한 것과 법

원 폭력하고 같겠습니까? 자꾸 그걸 같이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오도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법적인 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김기표 위원** 전혀 다른 사안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양형 기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민의 건전한 법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법치주의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조치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더 발전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법무부차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고 1·2·3·4·5 쪽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1·2·3·4·5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 나오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석상으로는 관련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할 수 있지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양보한 법안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건 뭐냐 하면 마지막 호에 이와 관련된 인지 사건을 수사 범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인데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 앞에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이런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낸 안과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 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표 위원** 어떻게 논란이 있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상으로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인가……

○**김기표 위원** 해석상으로 같은 말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6호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김기표 위원** 해석상으로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런 해석은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이 논점이 돼서 중요한 문제라면 이것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건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나 기존 열세 번의 특검법에서 있었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나 둘 다 파격적으로 기초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뛰어넘어서 완전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해석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형소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은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인지된 관련 사건이랑 관련 사건이 어떻게 같아, 완전히 다른 거지?

○**위원장대리 박범계** 잠깐 잠깐.

아까 김기표 위원님 질의에 김기표 위원님 본인이 들으셨는데 정확하게 차관님 답변이 뭐였지요?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

○**김기표 위원** 예,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같다고 얘기했지요? 같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위치가 기존 국민의힘 안에서는 6호에 있어서 위의 사건과,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위에다가 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해석상 같은 거냐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사건이라 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의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완전히 다른 거지.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코미디지.

○**위원장대리 박범계** 유상범 간사님 조용히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범계 위원장대행에 대해서는 말을 들을게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 김석우 차관님, 아까 박지원 위원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논란이 된 특검 법안은 공소유지지만을 위한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따져 보면 한 2월 8일경에 대통령이 기소가 될 것이고, 특검이 만약에 출범한다고 해도 구속만 해도 2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공소유지만을 위한 특검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존에 열세 번 있었던 특별검사법은 모두 다……

○조배숙 위원 수사를 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보충성·예외성이 있고 분명히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이 특검은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논의가 된 것이라, 사실 이 특검법안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특검을 할 실익이 뭐가 있는가,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검을 하려면요 돈이 엄청 듭니다. 한 수백억 들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 말에 예산 절감을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다 삭감을 했고 또 4조 8000억 규모의 예비비도 절반으로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수백억 원이 드는 예산을 낭비하는 건데 과연 그걸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해석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특검 검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해 놔야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 의견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처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 관저는요 경호시설 뿐만 아니라 국가 1급 보안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정보원이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중요시설로 통합방위본부가 관리하고 그래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군부대가 관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규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 중의 하나라도 안 되면 영장을 받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2개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인 논쟁이나 토론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형사법학자들이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했던 판사, 법관과 동일한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직 판례가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대리 박범계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민 위원 간밤에 전치 4주의 폭행을 얻어맞은 사람한테 수학 공부하자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법사위 현장에 벌어져서 황당합니다.

특검에서 비서실,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특검이 지금 당연히, 내일이라도 특검 공포하면 특검이 대통령 구속기간 안에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그걸 늦추는 게 이 정부고 그걸 늦추게 요구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설특검 다 통과돼서 언제든지 임명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예요. 내란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게 이 정부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특검이 수사할 게 없다고요? 무용론? 특검 무용론 들고 나오려고 여태껏 시간 끌었던 거지요.

아직 비서실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됐고 국무위원들, 지금 법무부장관도 비화폰 썼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수사 특검이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특검에서 수사해야지요. 지금 검찰에서 장관들 다 무혐의 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에 대한 수사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지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행정처장님, 이 화면 보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고 있습니다.

○ 김용민 위원 방화, 불을 지르고 집어던지는 모양이에요. 이거 방화 혼적 확인했어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습니다마는 저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용민 위원 이게 지금 방화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불 붙여서 집어던지는 모습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확인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지금 방화까지 저질렀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사람이 있었지요. 불길이 번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지금 살인 목적이에요.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아까 낙수 공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협력 대통령부터 다 팬찮다고 하니까, 나와서 나를 위해 싸워 달라 이러고 있고 지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들한테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으니까 팬찮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언론인한테는 또 이랬습니다. 집단 구타를 했는데 ‘죽어도 괜찮아. MBC 죽여야 돼’. MBC 기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인다라고. 이거 살인 목적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런 짓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법리적 논쟁 한번 해 보자고요? 수사권 한번 논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장이 무효다 그 주장을 여기서 또 하고 있으면 제2, 제3의 내란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과 법무부차관, 두 분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차관님, 저는 이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 당연히 재의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히 권력자를 수사할 때 권력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까 봄 만들어진 아주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그냥 일반 국민들 상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하면 일단 수사 범위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도 많이 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내란 선전·선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일반 국민들 상대로 현재도 고발하고 있는데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즉답을 못 합니다. 포함된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리고 외환 유치를 빼다라고 하지만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앞의 문구에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상용 어구인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처럼 확장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그것은 법사위나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오히려 제외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게 원칙인 것처럼 해서 관련 사건 다 수사할 수 있으니까 관련 인지사건 조항은 남겨 놔도 된다? 그것은 논리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수사 범위가 특검이 발족됐을 때 누가 어떤 혐의로 어떻게 조사받겠다는 게 대충 가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측 가능성이 있고 법에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충성이나 예외성에 일치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처럼 말을 빙빙 돌리면서 마치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고수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관련 인지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한정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일반 국민들 상대로도 수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의요구권은 사후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와는 달리 꼭 법 규정에 모든 게 위헌이 확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법안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괜찮은 법안이 있으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위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임시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특검은 중립성이나 이런 것에, 민주당이 압박하는 이런 데 약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압수수색 범위나 이런 것들도 이 사건만 특별히 예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더라도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문제가 되면 돌려주겠다는 식인데 벌써부터 군에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핵심 위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경찰, 검찰,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헌정사상 최초로 공소유지를 위한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체계가 기준 것과 충돌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일단은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별검사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성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성 범위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관련성 범위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특검법 7호에 있었던 선전·선동의 해석이라든지 8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에서 논의해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성이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합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합리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특히 소위에서 논의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전·선동 관련돼서는 과연 어디까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든 이번 내란 사태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전·선동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치 시대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심은 받게 되지만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라는 거지요. 괴벨스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저것 거짓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긴가민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의 잣대는 다 있을 거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부정되고 있는, 본인 이 본인도 잘 모르는, 의심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가장 크게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계속, 아까 박은정 위원이 PPT에서 보여 줬다시피 11전 11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원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의한 거다 이러면서 법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니까 내란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일국의,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용기를 갖고 저런 폭동까지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너무 이렇게 편웨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 그 다음에 또 광장의 우리 국민들을 무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편웨하는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법사위 권위가 섭니까? 맨날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킵시다. 법사위의 권위와 예의를 지켜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제가 현재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카뮈의 명언을 제가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고 명심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 퇴장하는 국민의힘을 보니까 참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을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내쫓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또 나가네요, 이런 말을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교정본부장 신용해  
법제처

처장 이완규

○법원총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